



ISSN 2288-5536

KOREG RESEARCH

제6권 1호 (통권6호)

[시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신기동(공학박사)

[연구논문1] 창업생태계 진단 및 창업정책 현황 분석

— 창업진흥원 조사연구실 손희영(경영학박사)

[연구논문2]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김수동(경영학박사)·이철성(경영학박사)

[연구논문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부 박찬영(경영학박사)

[기획분석]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소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부 김인엽(차장)

[차례]

〈 시 론 〉

-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연구논문〉

- ▶ 창업생태계 진단 및 창업정책 현황 분석 19
- ▶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55
-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 81

〈기획분석〉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소고 107

〈 부 록 〉

- ▶ 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통계 139
 -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일람표 157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신기동(공학박사), skd@gri.re.kr

I. 머리말

II.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1.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주요 내용
2.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과제

III.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발전적 대안 모색

1. 성장촉진형 지원정책 강화
2. '전문성' 및 '차별화' 관련 지원시책 강화
3. '소상공인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 강화
4. 정책전달 중간매개자로서 소상공인 조직체의 역할 활성화
5. 업종단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비중 확대
6. 지속가능 모델로서 업종단위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I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경까지 특별한 소상공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수 중심의 소상공인 분야는 경제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유통·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2000년대 들어와 가속화되고 경제분야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기업형 체인점의 급속한 확산은 소상공인 쇠락을 야기하여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주목을 끌게 되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와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대기업의 규제를 통한 보호(규제정책)와, 예산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정책)의 2가지 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후자의 경우, 크게 소상공인, 소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 주도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등 제반 지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자영업 진입과잉과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대체로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며 이는 정책 목표와 방법론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경기지역을 사례로 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전략의 혁신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경기도 사례

1.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주요 내용

경기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15년에 자치조례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기도 지역단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른 세부 사업의 집행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두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체계는, 경기도가 사업방향을 설정하면 GBSA에서 대부분의 사업집행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독자 지원사업이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된 측면이 있다. 때문에 경기지역 사례분석의 결과는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크다.¹⁾

실태분석 대상이 된 2016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GBSA의 지원사업은 크게 창업지원(창업스쿨, 기술(재)창업, 도제지원 등), 경영안정·활성화 지원(현장컨설팅, 경영환경개선, 가업승계 등), 정보지원(상권영향 상권분석 등), 폐업지원(사업정리 도우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기신보의 지원사업은 크게 신용보증(햇살론, 특례보증 등)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소상공인 지원자금)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2018년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공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시장경영혁신 지원 등 6개 분야에 걸쳐 약 2,8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소공인과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교육,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컨설팅,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마케팅지원, 소상공인자금, 협동조합활성화, 정보,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등 11개 분야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표 II-1>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2016년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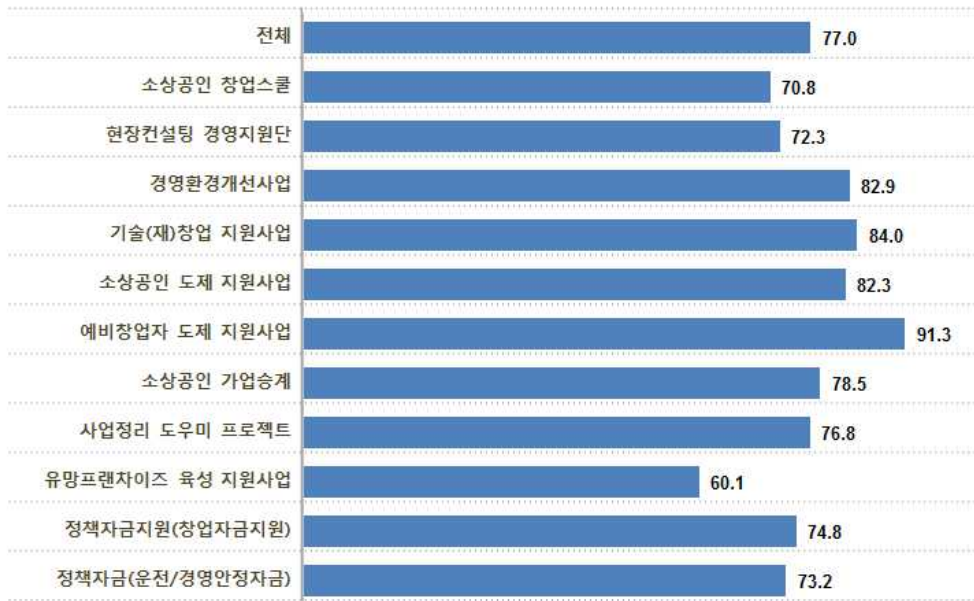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현 GBSA)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분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스쿨, 소상공인 기술(재)창업,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소상공인 한마당	신용보증	햇살론,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 보증, 전통시장 특례보증,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굿모닝론 등
경영안정·활성화	현장컨설팅 경영지원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가업승계,		
정보	경기도 상권영향 정보분석 서비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	용자지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2.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과제²⁾

2016년 현재 경기도 독자사업으로 시행중인 11개의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환경개선, 기술(재)창업지원, 도제지원, 가업승계, 사업정리 도우미 등의 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예비창업자 도제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창업스쿨,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타 사업 대비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 이 부분의 내용은 2016년 11월에 경기지역 소상공인 768명(지원사업 참여자 437명, 일반 소상공인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췌한 것이다.

<그림 II-1>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야별 만족도 비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자, 무응답 제외, 단위: 100점 만점)

지원사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지원사업 분야’로는 ‘자금지원 > 임대료 안정화 > 교육 > 정보제공 > 컨설팅 > 홍보/마케팅 > 폐업지원 > 협동조합 활성화 > 프랜차이즈육성’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사업’ 단위의 정책수요 분석에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자금지원, 점포임차보증금지원, 장기안심상가 선정 및 운영, 소상공인 창업교육, 상가매입비 지원 순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집단과 달리 일반 소상공인 집단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관련 세부사업(임차보증금,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임대차분쟁 등)들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임대료 안정화 관련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I-2> 세부사업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요(응답률 상위 10개)

(단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		응답률 순위	일반소상공인	
경영운전자금지원	17.8	1	창업자금지원	20.2
창업자금지원	12.8	2	점포임차보증금지원	11.8
경영개선자금지원	6.9	3	장기안심상가 선정 및 운영	10.3
소액무보증대출지원	6.6	4	소상공인 창업교육	6.0
소상공인 창업교육	6.4	5	상가매입비 지원	6.0
소상공인 컨설팅	4.3	6	경영운전자금지원	5.1
점포임차보증금지원	4.1	7	소액무보증대출지원	4.8
경영교육	3.2	8	동종 성공업체에서 매장근무	4.2
창업경영 컨설팅	2.7	9	재기교육	4.2
청년창업 교육	2.5	10	공동마케팅지원	3.0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3.0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반적 문제점 및 필요사업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사업홍보 효율화’에 관한 지적이 가장 많다.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금지원 확대’, ‘사업분야 다양화’, ‘사업운영 개선’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징적인 점은 세부 지원사업 단위에서는 자금지원 다음으로 교육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이 특히 많다는 것이다. 자금지원과 교육사업 분야 참여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노력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3>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반적 문제점 및 필요사업

(단위:%)

유형 구분		세부적 문제점 및 필요사업	
사업홍보 효율화	8.0	· 홍보·정보전달 활동이 양적으로 미흡하다	4.6
		· 홍보·정보의 내용(정확성, 맞춤형, 구체성)이 부실하다	2.8
		· 신문, 방송, 책자, 우편물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0.6
자금지원 확대	7.4	· 자금지원의 양적 확대	4.6
		· 자금지원 조건의 개선(상환기간, 선지원, 이자, 지속성 등)	2.8
사업분야 다양화	7.2	· 교육내용 다양화(창업교육, 업종별 교육, 회계, 제품개발 등)	2.6
		· 온라인 등 마케팅 지원	1.3
		· 보증금 및 임대료 안정화 지원	0.9
		·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0.5
		· 환경개선 지원 바란다	0.4
		· 금형비 지원 바란다	0.4
		· 지원사업 세분화, 다양화	1.1
사업운영 개선	5.6	· 교육의 질적 미흡(일반적, 사례위주, 비맞춤형, 멘토부족 등)	2.2
		· 교육의 형식 개선(기간확대, 업종/분기 구분실시, 시간대 다양화, 지속성, e-러닝 등)	1.8
		· 컨설팅의 질적 부실(맞춤형, 전문성 부족)	0.9
		· 창·업지원의 실효성 미흡	0.7
참여기회 확대	2.3	· 지원조건이 까다롭다(지원대상, 지원조건 등)	1.5
		· 서류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0.8
기타	1.3	· 서울과 경기 지원 정책을 일원화 했으면 한다	0.4
		· 시스템 개선 바란다	0.3
		· 제도를 보완하여 아무나 창업 할 수 없었으면 한다	0.3
		· 인적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한다	0.3

주 : 인터넷+전화+방문(N=768) 전체 집단 대상의 설문결과에서 응답률 상위 60개의 응답 내용만 선별하여 유사 응답을 통합, 재정리한 결과임.

III.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발전적 대안 모색

1. 성장촉진형 지원정책 강화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전문성과 기술력,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육성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전반적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임금근로) 창출 원천으로 육성하는 것은 일자리정책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 단계를 극복하고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성장촉진형 지원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창업단계의 지원요건을 강화하여 준비기간, 자격증, 교육·경력, 현장경험, 자본력, 업종별 생존률, 제품/아이디어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잠재력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엄선된 창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진입 성공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집중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업지원에 대해서도 ‘선택적 집중’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집중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택적 집중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하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정책기법의 고도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개입 최소화와 공정한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의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조직체계 및 소기업 지원시스템이 성장촉진형 지원모델로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2. ‘전문성’ 및 ‘차별화’ 관련 지원시책 강화

소상공인의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장내에서 차별

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숙련도의 차별화이든 제품영역의 차별화이든 ‘차별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별화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에 대응하여 소기업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 경쟁력의 원천이다.

숙련도의 차별화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장인’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장인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직업교육 단계에서 고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방법과, 현업에 종사하면서 기술을 전수받고 연마하여 습득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제품영역의 차별화 측면 전문성은 모방이 어려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데, 첨단기술 뿐 아니라 음식점과 같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모방이 어려운 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숙련도를 높이는 데 관련된 시책으로 ‘고숙련 창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³⁾

소상공인들의 기술 및 제품 차별화와 관련해서는 R&D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차별화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대한 지원은 현행 정책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양적인 지원 확대에 그치기보다 자본력, 인력, 정보력 등 제반 역량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의 맞춤형 지원시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소상공인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 강화

주요 선진국들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개별적 직접지원보다는 소상공인

3) 고숙련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창업자금 지원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방식으로 ‘숙련도 측면에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며, 현업에 종사하면서 고숙련 단계에 도달한 재창업자의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 생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접근이다.⁴⁾

소상공인 생태계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 요소들, 즉 시장수요(판로확보, 상권위상), 경쟁조건(대형점, 점포밀도), 금융, 세제, 인력수급, 기술혁신, 정보수집, 환경규제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생태계 요소들 가운데 정책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 즉 ‘공공인프라’ 성격의 생태계 요소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현행의 정책 가운데에도 생태계 조성 측면의 시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양과 질에 있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⁵⁾ 따라서 소상공인 생존여건 개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상공인 시장영역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진입규제’ 제도의 도입·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⁶⁾

둘째, 대기업 하청계열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편입된 소상공인들의 경

- 4) 현행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개별 사업체 단위의 일회성, 직접적 지원시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환경개선 등 대다수의 지원사업이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다. 운전자금과 같은 현상유지를 위한 지원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응책으로서 그 지원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며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존능력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 5) 현행 정부시책 가운데 생태계 조성 측면의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경쟁조건’ 측면에서 소상공인 시장영역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형점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라 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조달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로서 생태계 조성 측면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은 경쟁조건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시장 진출입 판단을 돕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생태계 구성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6) 이와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시급성과 목적이 합당하더라도 제도설계가 잘못되면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신속하게 검증하고 교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우 시장영역 보호보다는 대기업,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이와 관련 현행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검찰 등)에 집중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권한(조사권, 조정권, 고발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⁷⁾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대신 광역지자체는 현장밀착형 행정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관련 분쟁조정에 집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정거래 관행과 문화를 지역경제공동체의 저변으로 확산하고 이는 곧 소상공인들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⁸⁾

4. 정책전달 중간매개자로서 소상공인 조직체의 역할 활성화

생태계 조성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전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이 조급하게 촉진하고 견인하는 방식으로서는 장기적인,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⁹⁾ 공공주도형 정책전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정책전달 중간매개자로서 소상공인 조직체’의 역할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¹⁰⁾

- 7)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에 따라 서비스의 수급에 있어 양적, 질적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일수록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상황에 노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8)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재정규모나 분쟁조정 수요 등 여건이 성숙된 지자체의 경우는 공정위의 역할을 일부 위임받아 분쟁조정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최근 동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등 일부 권한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9)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은 민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공공주도형의 정책전달 시스템에서는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개별 소상공인에게 직접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서비스의 품질과 그 성과는 전적으로 공공부문의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흔히 제기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논란은 상당부분 공공주도형 시스템에서 기인하고 있다.
- 10) 민간부문 중간매개자로서 소상공인 조직체는 기존에 공공이 주로 시행하던 교육, 컨설팅, 공동사업, 환경개선 등 개별 사업자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주도적,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일한 지원사업을 공공부문이

기존의 전국적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 외에도 지역단위, 업종단위로 다종다양한 소상공인 조직체가 형성될 수 있다.

중간매개자로서 소상공인 조직체는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되 소요 재원을 공공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다.¹¹⁾ 이 때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의 지원역할이 상충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공공부문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의 기획과 실행은 민간역량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해 가는 구도로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 조직체가 정책의 중간매개자 역할을 넘어 소상공인 우호적 생태계의 형성에 있어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부문 중간매개자 활성화를 위한 일차적 추진 과제는 중간매개자 역할에 적합한 소상공인 조직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조직체가 정책전달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광역 단위 소상공인 업종별 조직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궁극적으로는 시·군 단위의 업종별 소상공인 자치조직 활성화 단계에 도달할 때 정책전달 중간매개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업종단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비중 확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은 동질성이 높은 업종 단위에서 모색함이 바람직하다.¹²⁾ 제과점, 세탁소, 요식업, 인테리어, 미용, 가구,

아닌 민간부문 중간매개자 수행할 경우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효성이 높은 내용과 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소상공인 조직체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직 구성원인 소상공인들의 회비 또는 사업참가비 등의 형태로 자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태나 인식수준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조직체가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 발전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12)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교육, 자금, 컨설팅, 정보, 시설, 판로

카센터, 의류판매, 주얼리, 인쇄, 서점, 피시방, 안경점 등 매우 다양한 세부업종 단위에서 상이하고 특색있는 소상공인 육성방안이 도출될 여지가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우호적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및 ‘정책전달 중간매개자로서 소상공인 조직체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는 업종 단위의 접근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구체적 실천대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업종 단위의 소상공인 조직체는 업종별 특성을 살린 시책사업을 발굴, 실행하는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호적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관련 지속가능한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 단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한 당면 추진과제로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높은 주요 업종을 선별함으로써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단위 소상공인 육성정책의 개발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하여 해당 업종 소상공인 조직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립 및 활동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¹³⁾

6. 지속가능 모델로서 업종단위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강점을 지닌 협동조합, 특히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의 유력한 생존대안으로 자리잡고, 나아가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및 정책전달 중간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전략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¹⁴⁾ 이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소상공인

등의 정책수단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되는 게 일반적이며, 지원대상은 가급적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요건(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폐업예정자, 가업승계자 등)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 일반 수준에서의 정책은 업종별 특성과 무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대해서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13) 적어도 설립 초기에는 소상공인 조직체의 역량이 미흡할 것이므로 업종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연구개발을 공공부문이 주관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나, 소상공인 조직체의 역량이 성숙될 경우 공공부문은 예산과 공공인프라 등의 측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간-공공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4) 업종별 협회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독립된 경영주체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⁵⁾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공공주도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소멸시키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우호적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 단계의 과제로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앞에서는 주로 좁은 의미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즉 예산을 수반하는 직접적 지원사업의 문제점 진단에 따른 대안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의 생존여건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높인다는 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구조적, 거시적 측면의 쟁점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실행수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영업 창업 시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자영업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창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재취업과 창업을 구분하지 않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구직자들의 경우 창업을 유도하기보다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임금근로자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협동조합의 절대다수가 이에 해당)은 상당한 범위의 사업내용에 있어 단일한 경영체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공동화 사업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때문에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 15) 2018년 9월 26일 현재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일반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12,747개이며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적으로 62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대다수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시·군 단위의 동업종 사업자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가 수 명에서 수십 명 이내의 소규모이며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협동조합의 형성, 발달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하다.

둘째, 소상공인 분야에서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부실한 프랜차이즈 난립과 낮은 생존률,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따른 가맹점(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질서 합리화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건실한 가맹사업자의 선별적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과 공정거래 관련 정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의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영성과는 자영업자 각자의 노력 외에도 자영업 점포들의 집합체인 상업지구 전체의 경쟁력, 즉 지역상권 경쟁력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교외형 대형쇼핑시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상권 육성정책이 중요하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제도와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자원 투입의 양과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복지시스템 고도화로 자영업 과밀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와 노후복지대책 개선으로 자영업 창업의 필요성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자영업 진입과잉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시경제, 산업, 복지, 고용 등 제반 국가정책의 영역들과 관련된 과제로서 상호연계 하에 추진되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업생태계 진단 및 창업정책 현황 분석 - 텍스트마이닝 활용 -

창업진흥원 조사연구실
손희영(경영학박사), sonhy@kised.or.kr

본 연구는 한국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창업생태계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국내외 창업 관련 통계를 기초로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진단하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 및 관련 정책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 서론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벤처열풍에 힘입어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정길호·김병근, 2017). 하지만 IMF라는 국가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 급성장하던 벤처버블이 붕괴되면서 국내 창업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였다(박상규·김대수·손희영, 2018). 이후 정부는 창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의 창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과제로 창업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25번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를 이행하기 위해 ‘교수·연구원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아이디어상업화 및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신기술 창업생태계 구축’, ‘1인 창조기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 1번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설정하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21번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전 정권보다 강력한 창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등 강력한 창업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 창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I-1>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업수 (개)	41,728	56,830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96,155	98,330
증감율 (%)	-	36.2	6.1	8.0	13.9	1.9	12.1	10.7	2.5	2.3

출처 : 신설법인동향(중소벤처기업부), KOSIS국가통계포털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신설법인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9만8천개를 돌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곧 신설법인 10만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업시장 성장에 힘입어 매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I -2> 연도별 활동기업 추이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수 (개)	4,908,035	5,031,599	5,146,659	5,304,807	5,379,187	5,377,482	5,558,767	5,553,564	5,775,996
증감율 (%)	-	2.5	2.3	3.1	1.4	0.0	3.4	-0.1	4.0

출처 :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많은 창업자들의 노력으로 국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창업생태계에 대한 진단과 창업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창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창업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창업생태계를 비교·진단 할 수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진단하고, 창업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창업생태계 및 정책의 현황과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창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 및 창업지원정책 현황 등을 고찰한다. 그리고 ‘창업생태계 진단’에서 창업환경, 기업가정신 등 인프라 부분과 창업기업의 창·폐업 및 성장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진단한다. 이어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창업생태계와 창업정책의 진단에 기초하여 국내 창업생태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의 정의

창업에 대한 정의는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전적 정의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한성수·양동우, 2017), 두 번째는 법률적 정의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창업자로 정의하고 정부지원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구를 통한 정의로 연구자들마다 자신의 연구목적에 따라 정의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정의로 Schumpeter(1934)는 ‘점진적인 부(재산, 시간, 자신의 장래 등을 담보하는 부)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며, 창업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Peter Drucker(1985)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성창용·정호연, 2016). 또한, Timmons(1994)는 ‘개인 또는 조직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을 정의하였으며, Baek(1999)는 ‘사업 아이템과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초기의 사업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 직관적인 형태의 정의도 존재한다(창업진흥원, 2017).

최근에는 ‘창업’이라는 단어와 함께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타트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유래된 용어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의미한다¹⁾. 즉,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기초한 창업으로 ‘기술기반창업’을 의미하는 반면, 창

1) 한경 경제용어사전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389&cid=42107&categoryId=42107>)

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광의적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트업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기술기반창업’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술기반창업’이라는 용어는 아직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주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창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Bailetti(2012)는 1970~2011년까지의 기술창업 관련 93개의 논문을 검토하여 4가지 공통점을 찾아 통합된 정의를 제시하고, 4가지 기본요소를 설명하였다(창업진흥원, 2017). 이에 Bailetti(2012)는 기술창업을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creating and capturing value for a firm)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의 발달(advance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 전문가 및 이질적 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an investment in a project)”로 정의하였다(창업진흥원, 2017).

<표 II-1> 기술창업 연구의 공통점과 기술창업 정의의 기본요소

93개 논문의 기술창업 정의 4가지 공통점	기술창업 정의의 4가지 기본요소
① 기술자 및 과학자가 소규모의 기업을 운영	① 궁극적인 성과 : 가치 창출과 획득
② 특정 기술에 대한 문제점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발견	② 궁극적인 성과 창출·획득의 대상 : 기업
③ 과학·기술 지식에 근거한 기회를 탐색하거나, 신규 어플리케이션 제시 및 신규 벤처기업을 설립	③ 궁극적인 성과 창출·획득을 위한 방법 : 사업에 대한 투자
④ 기술변혁을 위해 이의 인력 및 자원들을 활용	④ 창업과 과학·기술 지식과의 관계 : 상호 의존성

출처 : Bailetti(2012), 창업진흥원(2017)

이처럼 창업과 관련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법률에 근거한 창업과 더불어 스타트업 즉, 기술기반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 창업지원정책

정부는 기술기반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현 정부 또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신동평·배용국·손석호, 2018). 이에 지난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대 추진방향²⁾은 ① ‘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 ‘「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2>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세부 추진과제

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①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②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③ 창업 걸림돌·애로·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④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⑤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⑥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⑦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③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⑧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⑨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
⑩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출처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7.11.2.) 재편집

2)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7.11.2.)

현재 정부는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박상규·김대수·손희영, 2018).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자금으로 창업을 위한 융자·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업화와 R&D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 2017년 중앙부처 유형별 창업지원사업 예산

유형	예산 (억원)
창업교육	309
시설·공간	770
멘토링·컨설팅	484
사업화	3,516
R&D	2,383
판로·해외진출	163
행사·네트워크	33
정책자금	19,360
소계	27,018

출처 : 신동평·배용국·손석호(2018)³⁾ 재가공

또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덕(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주, 정읍, 전주 등에 연구개발특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기초지자체는 첨단연구단지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신동평·배용국·손석호, 2018).

3) 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7), 창업기반 및 중소기업 성장 대책 분석

이러한 노력은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경우, 오바마정부 주도하에 2011년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①고성장 창업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②멘토와 창업가 연결 및 창업가 교육, ③규제완화 및 행정지원, ④혁신 가속화, ⑤개방 정부 등의 5가지 시책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9월 美중소기업청(SBA)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확대 성장을 위한 ‘Scaleup America Initiatives’ 발표하고, 미국 전역 8개 지역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평균 매출액 15~50만 달러 기업들에 대해 ①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 ② 경영지원, ③ 투자 연결 지원, ④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7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15개 지역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⁴⁾.

중국은 2014년 9월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을 주창한 이후, 창업대국을 향해 정부주도의 강력한 창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노버와 샤오미가 창업한 지역으로 유명한 중관춘을 중심으로 ICT 창업 열기가 확산되면서, 기술기반의 혁신 창업자를 의미하는 ‘창커(創客)’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정부지원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박혜영, 2015).

독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독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Mittelstand)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2015). 이에 독일 정부는 ‘SME Action Programme - 10 fields of action’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을 설정하는 등 창업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고 있다.

4) 美SBA 보도자료, ① <https://www.sba.gov/about-sba/sba-newsroom/press-releases-media-advisories/sba-scales-growth-oriented-entrepreneurs-maximize-job-creation>
② <https://www.sba.gov/about-sba/sba-newsroom/press-releases-media-advisories/sba-announces-support-eight-scaleup-communities-spurring-job-creation-growth-oriented-small>

<표 II -4> SME Action Programme - 10 fields of action

구분	내용
Point 1	Promoting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제고)
Point 2	Strengthen the financing of start-ups & growth (창업기업 금융지원 및 성장 강화)
Point 3	Tackle the skills shortage(기술능력 부족 문제 해결)
Point 4	Press ahead with better regulation and cutting red tape(불필요한 요식행위 축소를 통한 규제개혁)
Point 5	Utilise and shape digitisation(디지털화의 형성 및 활용)
Point 6	Strengthen innovative capacities(혁신적 능력 강화)
Point 7	Support SMEs as they globalise(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Point 8	Actively shape European SME policy(유럽의 중소기업 진화적 정책 형성 노력)
Point 9	Strengthen SMEs in structurally weak regions(구조적 취약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Point 10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fields of business deriving from the energy transition (에너지전환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

* 출처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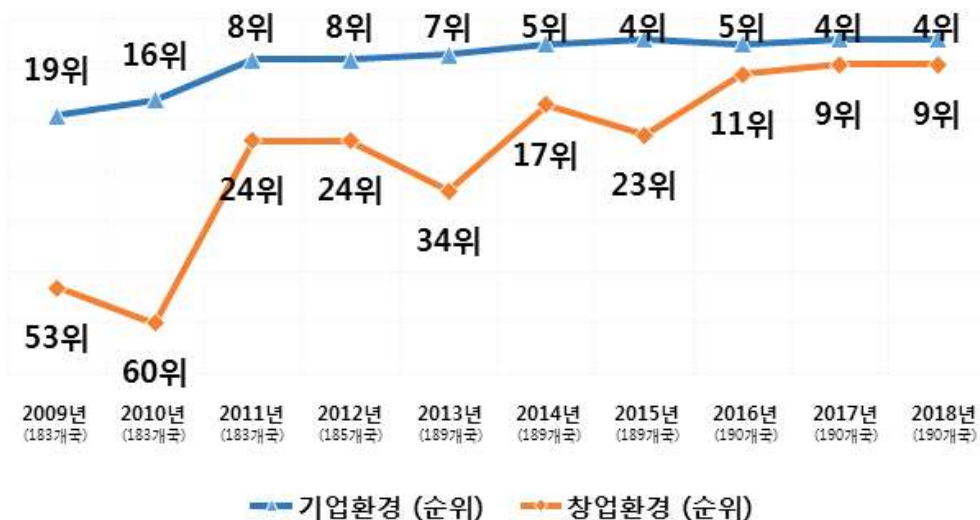
III. 창업생태계 진단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창업생태계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창업생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1. 창업환경 진단

World Bank(2018)에 따르면,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에 이어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4위에 올랐다. 또한 창업환경순위(Starting a business ranking)에서도 2016년 11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2018년 또한 9위 올라 세계적 수준의 창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연도별 World Bank 순위



출처 : 연도별 Doing Business(World Bank) 재가공⁵⁾

이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이 기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들에 비해,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환경 및 창업환경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III-1>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Economy	New Zealand	Singapore	Denmark	Korea, Rep.	Hong Kong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DB 2018 Rank	1	2	3	4	5	6	7
DTF score	86.55	84.57	84.06	83.92	83.44	82.54	82.22
DTF change	-0.18	+0.04	-0.01	0.00	+0.29	-0.01	-0.12

* 출처 : World Bank(2018)

반면 OECD⁶⁾에 따르면, 창업환경 요소 중 ‘규제의 복잡성’과 ‘스타트업의 행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

5) 연도별 Doing Business(World Bank) 보고서 내 지표 중,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기업환경순위), Starting a business ranking(창업환경순위) 만을 발췌하여 도식화

6) OECD에서 발표하는 ‘Going for Growth(구조개혁평가)’ 중 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부분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규제강도가 높음을 나타냄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3-2>은 국가별 시장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은 규제의 복잡성 측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타트업의 행정부담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Country	Complexity of regulatory procedures				Administrative burdens on startups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Finland	3.594	1.818	1.609	1.630	1.877	2.012	1.795	1.745
France	3.938	1.375	1.375	1.573	2.939	2.712	2.495	2.164
Germany	3.392	2.946	2.516	1.996	3.330	2.435	1.752	1.583
Italy	0.780	0.724	0.375	0.521	4.074	2.889	2.426	2.139
Japan	4.554	1.859	1.859	1.833	2.733	1.613	1.530	1.536
Korea	2.759	2.500	2.500	2.000	2.475	2.277	2.191	1.870
Sweden	4.541	2.783	2.773	2.769	2.013	1.795	1.579	1.445
United Kingdom	3.129	3.107	3.102	2.460	1.738	1.506	1.448	1.356
United States	2.135	1.147	1.140	1.132	1.436	1.572	1.491	1.407
China	-	-	2.938	3.646	-	-	4.362	4.110

출처 : OECD.Stat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GFG&lang=en#>)

이처럼 국내 창업환경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부분에서는 여전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타트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전히 많은 규제에 의해 스타트업이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국내에서 사업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기업가정신 진단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혁신적 창조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윤남수, 2012). 이외에도 Gartner(1989)는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Baron·Shane(2005)은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기 위하여 탐색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윤남수, 2012).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현재 GERA(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와 GEDI(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 두 기관에서 매년 조사를 통해 국가별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로써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먼저 GEM(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6년 이후부터 창업에 대한 기회인식 측면과 창업의도 측면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창업활동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창업하는 것에 대해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III-3>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Indicator	Economy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Perceived opportunities	China	36.17	48.84	32.24	33.07	31.88	31.71	37.33	35.21
	France	33.87	34.92	37.52	22.87	28.26		28.58	34.13
	Germany	28.48	35.17	36.16	31.30	37.59	38.27	37.56	41.96
	South Korea	13.01	11.24	12.52	12.73		14.39	35.32	35.30
	United Kingdom	29.24	33.30	32.82	35.54	40.99	41.55	42.30	42.98
	United States	34.79	36.25	43.49	47.16	50.85	46.63	57.27	63.59
Fear of failure rate	China	32.01	35.64	35.82	34.30	39.50	39.96	49.08	41.46
	France	40.48	37.13	42.84	41.13	41.18		40.26	39.07
	Germany	33.69	41.99	41.91	38.58	39.95	42.29	41.04	36.31
	South Korea	32.47	45.08	43.01	42.29		38.11	31.54	32.16
	United Kingdom	30.34	36.05	36.01	36.40	36.84	34.93	35.23	35.85
	United States	28.49	31.19	32.32	31.11	29.66	29.36	33.33	33.36
Entrepreneurial intentions	China	26.90	42.81	20.39	14.42	19.33	19.52	21.30	15.29
	France	14.18	17.70	17.29	12.59	14.20		15.69	17.62
	Germany	6.37	5.49	6.01	6.84	5.93	7.18	6.23	7.22
	South Korea	10.09	15.74	12.98	12.07		6.62	27.47	22.79
	United Kingdom	5.10	8.85	9.52	7.19	6.88	8.16	9.14	7.27
	United States	7.33	10.92	12.53	12.18	12.08	12.35	11.73	14.54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	China	14.37	24.01	12.83	14.02	15.53	12.84	10.29	9.87
	France	5.83	5.73	5.17	4.57	5.34		5.32	3.92
	Germany	4.17	5.62	5.34	4.98	5.27	4.70	4.56	5.28
	South Korea	6.56	7.82	6.64	6.85		9.25	6.69	12.98
	United Kingdom	6.42	7.29	8.98	7.14	10.66	6.93	8.80	8.40
	United States	7.59	12.34	12.84	12.73	13.81	11.88	12.63	13.64
High Job Creation Expectation	China	20.00	34.87	18.23	22.94	13.65	35.00	26.70	24.32
	France	18.45	27.78	23.43	18.22	24.20		21.20	27.86
	Germany	17.71	19.98	23.10	19.55	20.04	21.00	21.50	21.95
	South Korea	22.99	14.56	29.44	19.72		15.60	21.60	9.66
	United Kingdom	19.01	26.58	23.66	20.20	21.33	19.00	28.40	23.39
	United States	30.30	29.40	27.08	28.01	34.21	31.70	34.20	38.61
High Status to Successful Entrepreneurs	China	76.93	73.41	76.13	73.53	72.91	77.62	77.80	74.57
	France	67.87	67.95	76.82	70.03	70.43		69.00	74.21
	Germany	77.12	78.35	76.40	75.23	79.10	75.70	78.90	77.90
	South Korea	71.27	67.20	69.59	67.80		53.52	60.20	68.57
	United Kingdom	76.71	81.00	76.69	79.33	74.99	79.24	77.20	75.60
	United States	75.85				76.87		74.40	75.49
Entrepreneurship as a Good Career Choice	China	70.03	73.12	71.67	69.61	65.68	65.94	70.30	66.35
	France	65.19	65.76	64.54	55.30	59.05		57.10	59.06
	Germany	53.07	55.02	48.92	49.40	51.66	50.77	51.80	51.31
	South Korea	67.57	61.06	59.37	51.31		37.97	45.30	47.24
	United Kingdom	50.98	51.94	49.79	54.06	60.30	57.85	58.80	55.59
	United States	65.44				64.73		63.70	63.05

출처 : GERA (<https://www.gemconsortium.org/data/key-aps>)

다음으로 GEI(Th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 세계 137개 국가 중 24위에 올라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창업에 대한 태도, 능력, 열망 등 모든 분야에서 30위권에 올라있으며,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개선된 국가로 꼽히기도 하였다(GEDI, 2017).

<표 III-4> Th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8

Countries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ENTREPRENEURIAL ATTITUDES		ENTREPRENEURIAL ABILITIES		ENTREPRENEURIAL ASPIRATIONS	
	GEI	rank	ATT	rank	ABT	rank	ASP	rank
United States	83.6	1	80.0	2	86.0	2	84.9	2
Switzerland	80.4	2	69.5	11	86.4	1	85.5	1
Canada	79.2	3	77.9	5	79.9	5	79.9	3
United Kingdom	77.8	4	73.6	7	83.3	4	76.3	4
Australia	75.5	5	79.2	3	76.0	8	71.2	8
Denmark	74.3	6	71.9	8	84.5	3	66.5	16
Iceland	74.2	7	82.3	1	69.9	9	70.3	9
Ireland	73.7	8	67.2	14	78.9	6	75.0	5
Sweden	73.1	9	71.1	9	78.7	7	69.5	13
France	68.5	10	61.4	17	69.7	10	74.4	6
Netherlands	68.1	11	77.4	6	65.3	14	61.7	22
Finland	67.9	12	79.0	4	62.9	16	61.8	21
Hong Kong	67.3	13	69.4	12	62.5	17	70.2	10
Austria	66.0	14	67.3	13	66.4	13	64.4	17
Germany	65.9	15	61.1	18	67.2	12	69.4	14
Israel	65.4	16	63.3	16	60.8	20	72.2	7
Belgium	63.7	17	53.8	23	67.8	11	69.5	12
Taiwan	59.5	18	54.0	22	54.8	24	69.6	11
Chile	58.5	19	70.3	10	50.9	27	54.3	30
Luxembourg	58.2	20	49.2	28	62.9	15	62.6	18
Norway	56.6	21	66.1	15	60.9	19	42.8	44
Qatar	55.0	22	48.4	29	54.5	25	62.2	19
Estonia	54.8	23	57.6	19	55.7	22	51.0	35
Korea	54.2	24	55.6	20	50.1	29	56.8	27
Slovenia	53.8	25	54.4	21	55.0	23	52.1	33

출처 : GEDI(2017)

또한, 강점으로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을 약점으로 문화적 지원(cultural support)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각 요소별 점수를 살펴보면, 제품 및 프로세스의 혁신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문화, 경쟁, 국제화 등에서는 낮은 수준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두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과 같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그림 3-2] 국가별 현황(Th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8)



출처 : GEDI(2017)

3. 생멸현황 진단

많은 언론에서는 “한국, 신생기업 5년 생존율 27% 불과”, “신생기업 4개 중 3개 5년 내 폐업 ... 생존율, 독일·영국 3분의 2 수준”, “창업기업 73%가 5년 내 폐업...소상공인이 98% 차지” 등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1년 생존율

62.7%, 3년 생존율 39.1%, 5년 생존율 27.5%로 창업 5년 후 10개 중 7개의 창업기업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형태별 생존율은 개인이 26.9%로 법인 35.6%에 비해 낮으며, 종사자 규모별 생존율은 1인이 26.3%로 2인 이상의 3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생존율로 기업 유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5> 국가별 생존율 비교 (2015년 기준)

국가	구분 (employees)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한국	전체	62.7	49.5	39.1	32.8	27.5
	1인	60.7	47.6	37.3	31.5	27.5
	2인 이상	79.2	64.9	54.6	46.2	39.2
독일	Total	76.2	57.8	50.0	43.2	38.3
	Zero	71.4	53.5	45.2	39.7	35.8
프랑스	Total	81.6	69.9	60.0	53.1	44.2
	Zero	78.8	65.7	50.7	44.2	37.3
이탈리아	Total	80.0	62.8	52.6	47.1	44.0
	Zero	77.5	58.9	49.0	44.2	40.8
영국	Total	92.1	74.7	58.9	50.6	41.0
	Zero	85.6	58.8	49.5	43.6	40.3
핀란드	Total	83.4	70.8	52.5	43.7	38.2
	Zero	82.3	67.3	56.9	40.6	36.7
스페인	Total	76.6	64.9	54.1	45.5	39.4
	Zero	74.5	62.4	51.6	42.8	37.1

출처 : 통계청(2017), Eurostat⁷⁾

7)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bd_9bd_sz_cl_r2&lang=en

반면 종사자 규모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의 경우 3년 생존율 54.6%, 5년 생존율 39.2%로, 유럽의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1인 기업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전체 생존율을 하향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창업과 폐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3-6>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6개 국가 중 창업율과 폐업률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창·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한정된 시장에서 소규모의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형태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한국은 창업의 환경 및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경영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아가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높은 폐업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 Birth rate and death rate of enterprises

Country	Birth rate of all enterprises						Death rate of all enterprises					
	2011	2012	2013	2014	rank	2015	2011	2012	2013	2014	rank	2015
Australia	13.3	9.7	13.7	13.8	7	14.8	13.4	15.2	12.4	12.6	4	12.5
Austria	7.7	7.5	7.1	7.0	24	6.8	7.1	6.7	6.0	6.1	22	6.1
Belgium	7.1	6.2	5.2	6.2	26	6.4	2.9	3.1	4.1	4.2	26	3.0
Czech Republic	10.6	8.7	8.0	9.1	18	8.3	9.1	9.7	8.3	9.3	11	7.5
Denmark	12.1	10.8	10.3	11.1	9	-	10.5	11.3	11.0	11.9	6	-
Estonia	11.9	12.2	11.1	10.7	11	10.3	8.4	8.2	9.0	7.9	19	7.7
Finland	9.8	8.9	7.2	7.8	20	6.7	..	6.1	7.3	7.4	20	6.7
France	11.0	10.1	9.5	9.9	16	9.4	6.5	5.6	5.3	5.6	25	5.3
Germany	8.7	7.9	7.4	7.2	21	7.1	8.5	8.5	8.3	8.3	14	7.7
Hungary	10.0	8.6	9.9	10.0	14	10.7	13.5	11.6	9.0	10.2	8	9.4
Ireland	6.3	6.8	-	6.8	25	7.3	9.6	8.7	-	8.0	17	2.0
Italy	6.7	7.0	7.1	7.1	23	7.3	6.9	6.9	7.8	8.7	13	8.9
Korea	14.9	14.2	13.8	15.0	3	14.5	12.6	13.4	12.1	14.1	3	-
Latvia	19.2	16.8	15.3	15.0	3	17.2	12.2	13.1	13.0	9.0	12	6.3
Lithuania	23.7	24.9	23.1	24.5	1	18.5	14.3	18.7	14.2	18.7	1	5.4
Luxembourg	9.7	9.5	9.8	10.0	14	9.4	7.6	7.3	7.6	8.0	17	7.8
Netherlands	11.2	10.3	10.1	10.1	13	9.7	7.6	8.8	7.9	6.4	21	6.4
Norway	8.2	8.7	9.2	8.3	19	9.1	4.3	4.2	5.7	5.8	24	4.1
Poland	12.5	11.5	12.4	12.5	8	12.1	11.3	11.2	11.6	11.8	7	-
Portugal	12.6	12.5	14.5	14.8	5	15.9	16.4	16.0	13.9	15.4	2	15.1
Slovak Republic	14.4	10.6	9.9	19.8	2	12.1	14.2	9.2	12.7	12.0	5	9.6
Slovenia	10.2	10.1	13.2	11.0	10	10.7	8.3	9.1	9.0	8.2	15	7.7
Spain	8.0	8.2	8.4	9.8	17	9.2	9.5	9.8	9.5	8.2	15	8.2
Sweden	8.2	6.8	7.1	7.2	21	7.2	5.2	7.3	6.6	6.0	23	5.9
United Kingdom	11.6	11.8	14.7	14.3	6	14.8	10.1	10.8	9.9	9.9	9	11.0
Romania	13.0	12.3	15.9	10.2	12	11.4	15.8	13.1	11.7	9.8	10	9.4

출처 :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DBS_BDI_ISIC4#)

4. 성장 진단

신동평·배용국·손석호(2018)는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아래의 5가지 문제점을 제안하였다.

- 신규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으로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창업 3~7년차 기업 지원이 부족
- 가벼운 창업 지원 확대로 창업 문화가 폭넓게 확산되었으나, 진입장벽이 높은 하이테크기반, 고학력 창업은 감소
- 부처 간 역할의 불분명, 사업 간의 유사·중복으로 수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의 효율성도 저하
- 창업 지원기관의 운영 효과 유지 및 향상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지원 효과성 강화 필요
- 공급자 중심의 사업운영으로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

* 출처 : 신동평·배용국·손석호(2018)

이 중 첫 번째가 바로 정부의 초기창업 중심의 지원정책이다. <표 3-7>과 같이, 국내 창업지원에 있어 전 부처를 가리지 않고 성장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 창업지원 유형별 사업 추진 부처 현황

구분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정책자금
아이디어·예비창업자	중기부, 교육부, 특허청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 특허청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문체부		금융위, 교육부
설립(1년 이내)	중기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문체부	과기부, 농림부	중기부, 농림부, 금융위
창업초기(1~3년)	중기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중기부, 과기부	중기부, 과기부	과기부, 농림부	중기부, 농림부, 금융위
성장기(3~7년)				중기부		
전주기		중기부, 과기부	과기부, 특허청, 농림부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중기부, 과기부	중기부, 과기부
재도전			과기부	중기부, 과기부	중기부, 과기부	중기부

출처 : 신동평·배용국·손석호(2018)

즉,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창업 이후 성장은 정부 지원보다 기업 스스로 해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Scale Up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을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국가이며, 최고의 창업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한국은 단 3개의 기업만이 유니콘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Start-up 기업들이 Scale-Up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III-8> The Global Unicorn

Industry	Company	County	Company
eCommerce/Marketplace	38	United States	121
Fintech	32	China	76
Internet Software & Services	26	United Kingdom	15
Healthcare	17	India	11
On Demand	17	Germany	6
Social	9	Israel	4
Big Data	8	Indonesia	3
Cybersecurity	7	South Korea	3
Ed Tech	7	France	2
Travel Tech	7	South Africa	2
Auto Tech	6	Switzerland	2
AdTech	5	Australia	1
Hardware	5	Brazil	1
Real Estate	4	Canada	1
Biotechnology	3	Colombia	1
Clothing & Accessories	3	Estonia	1
Construction Tech	3	Hong Kong	1
Digital Media/ AI	3	Japan	1
Food & Beverage	3	Luxembourg	1
Media	3	Malta	1
Mobile Software & Services	3	Netherlands	1
Robotics	3	Nigeria	1
Supply Chain Tech	3	Philippines	1
VR/AR	3	Portugal	1
Automobile	2	Singapore	1
BI & Analytics	2	Sweden	1
Computer Vision/ AI	2	United Arab Emirates	1
Consumer Electronics	2		
Digital Health	2		
Facilities	2		
etc	31		

출처 : CBInsights(2018.08.22)⁸⁾

8)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IV. 중소기업정책 현황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정책 창업 관련 정책의 수준과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창업기업 또한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해 있는 만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 4,292건의 Title을 수집하여 정책과의 관련성이 적은 지방청 보도자료 및 단순 통계발표 등을 제외한 4,069건의 Title 중 김대중 정부에 속하는 39건을 제외한 4,030건의 Title을 텍스트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가 연구동향 분석에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할 경우 연구논문의 초록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도자료가 정부정책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중심이 되는 내용을 Title에 반영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핵심내용만을 기술하는데 반해 보도자료에는 현황과 같은 부가적인 내용이 기술된다는 특성에 기초하여, 전문을 분석하는 것보다 Title만을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한성수·양동우(2017)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수문자 등을 제거한 후, ‘KoNLP’ 패키지를 이용하여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또한, 한 글자 단어는 의존명사이거나 독자적 의미가 없는 단어가 대부분으로, 두 글자 이상의 단어로 한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단어집합을 정책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로 구분하여 빈출 단어를 정리하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각 정권별로 상이하게 추진되며, 특히 창업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빈도분석

4,030건의 보도자료 중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후 1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또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30.7%로 많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중소·창업 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강력히 추진된 점과 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통한 중소·창업기업 관련 정책의 확대 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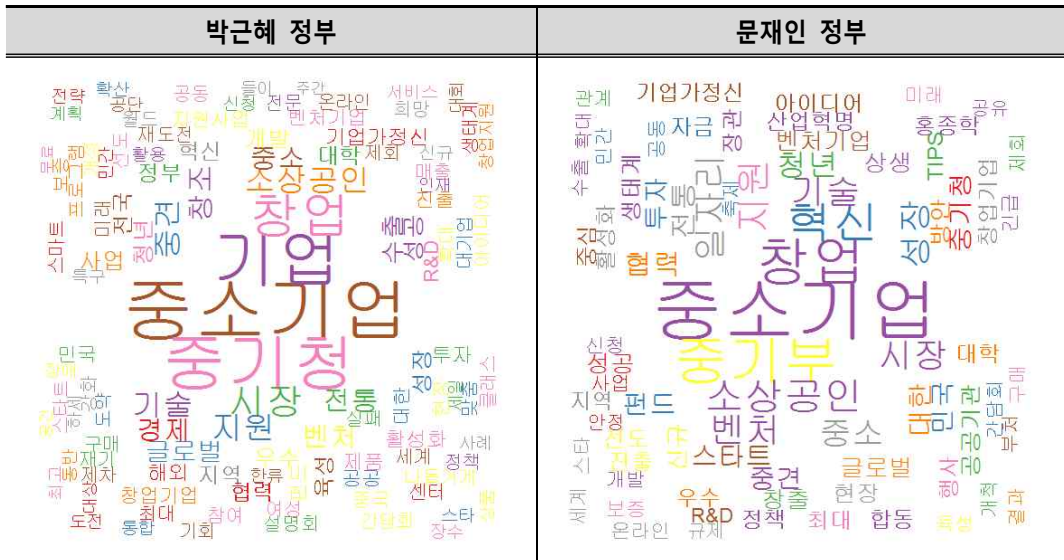
<표 IV-1> 각 정부별 보도자료 수

정부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보도자료 (건, %)	1,144 (28.4)	304 (7.5)	1,238 (30.7)	1,344 (33.3)

전체 단어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정부별 빈출단어 50개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작성하였다. 각 정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기청’, ‘중기부’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 ‘벤처’, ‘소상공인’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IV-1] 각 정부별 워드클라우드





워드클라우드를 출현하는 단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단어의 크기로 빈출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반면, 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량화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빈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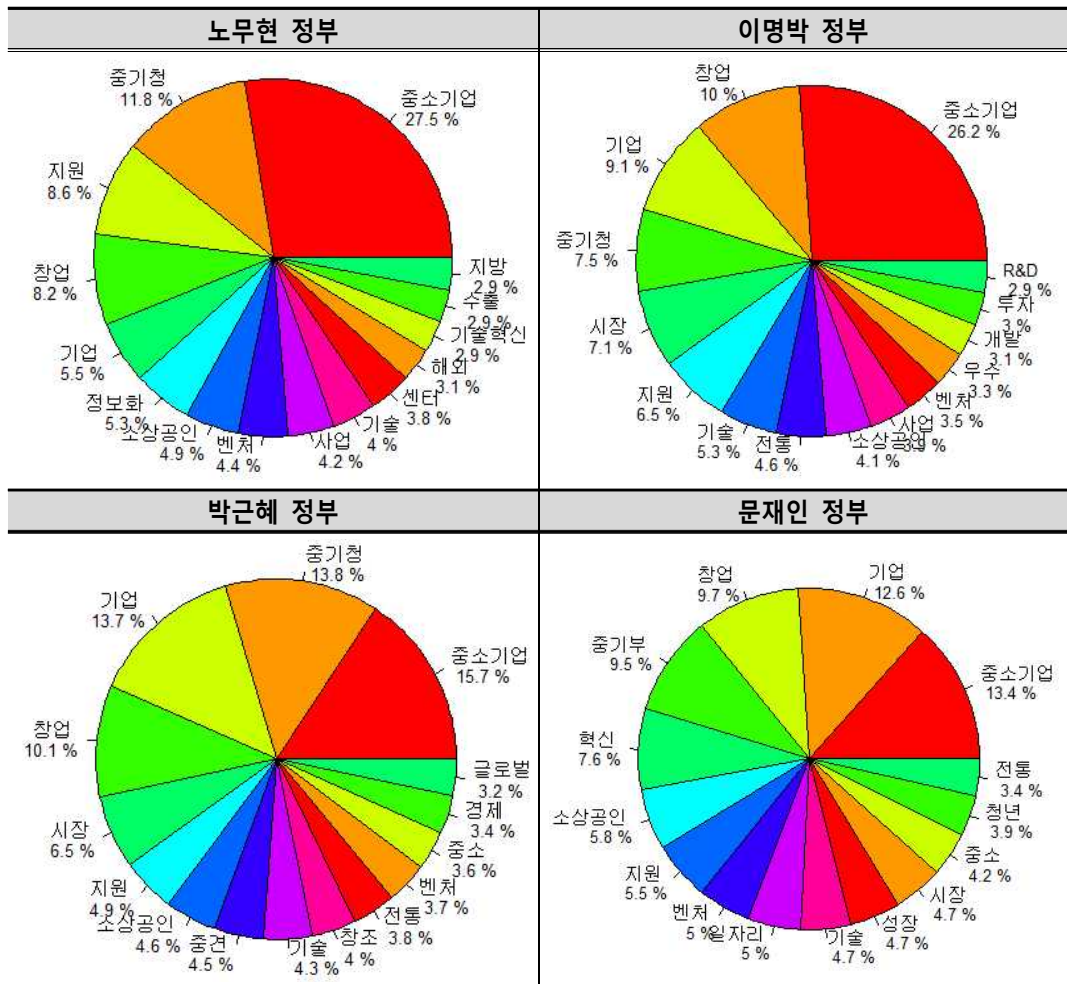
이에, 워드클라우드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각 정부별로 상위 15개의 빈출단어를 도식화하여 [그림 4-2]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각 정부별 빈출단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빈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창업’과 ‘벤처’, ‘소상공인’ 등은 각각 10%와 4%, 5% 내외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보화, 기술, 해외, 수출 등의 단어가 출현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술, 투자, R&D 등의 단어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술, 창조, 글로벌 등의 단어가 출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일자리, 기술, 성장, 청년 등의 단어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기술’이라는 단어가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 각 정부별로 상이한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V-2] 각 정부별 주요 빈출단어



3. 연관규칙분석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현황을 바탕으로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관규칙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장바구니분석(Market basket analysis)으로도 불리는 연관규칙분석은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기법 중 하나로, 항목집합(Item set)의 항목들 간 연관성을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김미성·김남규·안재현, 2012). 연관규칙의 유효성 평

가는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의 3가지 지표를 이용한다 (Agrawal·Srikant, 1994; 최하영·고남욱·윤장혁, 2015).

지지도는 연관규칙을 구성하는 항목집합이 포함된 트랜잭션의 전체 트랜잭션 중 비율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항목 간 관련성의 성립정도로써 규칙의 강도를 나타내며, 향상도는 해당 트랜잭션 간의 상호관련성을 나타낸다(최하영·고남욱·윤장혁, 2015). 각 지표의 식은 아래와 같다(최하영·고남욱·윤장혁,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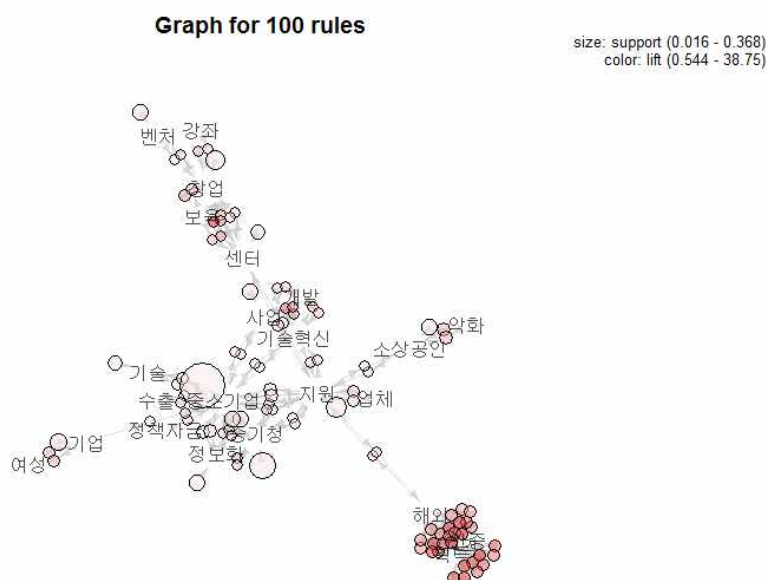
$$\text{지지도} = P(A \cap B) = \frac{A \text{와 } B \text{를 동시에 포함하는 수}}{\text{전체 수}} \quad (1)$$

$$\text{신뢰도} = P(B|A) = \frac{P(A \cap B)}{P(A)} = \frac{A \text{와 } B \text{를 동시에 포함하는 수}}{A \text{를 포함하는 수}} \quad (2)$$

$$\text{향상도} = \frac{P(B|A)}{P(B)} = \frac{P(A \cap B)}{P(A)P(B)} = \frac{A \text{와 } B \text{를 동시에 포함하는 수}}{A \text{를 포함하는 수} * B \text{를 포함하는 수}} \quad (3)$$

분석 결과는 [그림 4-3]부터 [그림 4-6]까지와 같다. 먼저, [그림 4-3]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연관규칙분석 결과로, 총 100개의 규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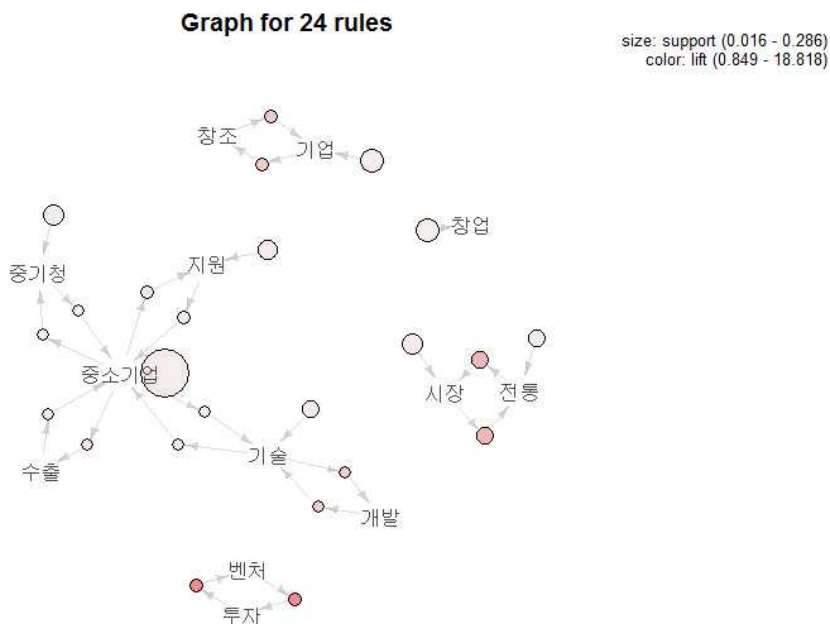
[그림 IV-3] 노무현 정부 연관규칙분석 결과



연관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 ‘정책자금’, ‘정보화’ 등의 단어가 연결되고 있으며, ‘창업’, ‘벤처’, ‘보육’, ‘센터’ 등의 단어가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인증’, ‘획득’ 등의 단어가 연관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악화’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 및 기술개발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정부지원기업에 대한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창업·벤처는 보육, 강좌 등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기악화가 이슈로 대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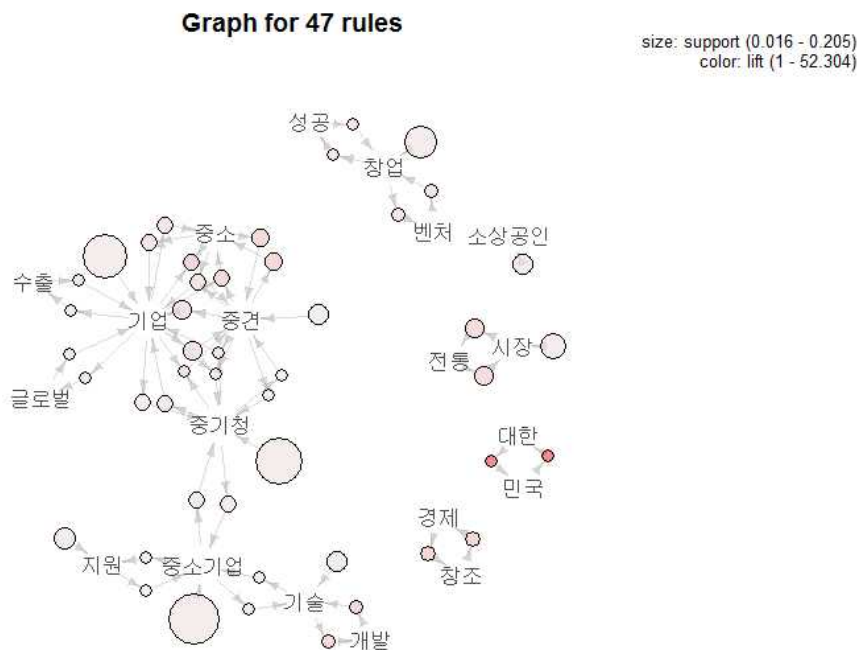
[그림 IV-4] 이명박 정부 연관규칙분석 결과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와 대조적으로 24개의 규칙만이 도출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술’, ‘개발’, ‘지원’ 등의 단어가 연결되고, ‘벤처’-‘투자’, ‘창업’-‘기업’, ‘전통’-‘시장’, ‘창업’ 등이 개별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나타냈다. 이는 앞선 노무현정부의 분석 결과에

서 다양한 단어들이 연결되었던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기술개발 지원, 벤처투자, 전통시장, 창조기업, 창업 등 정책분야별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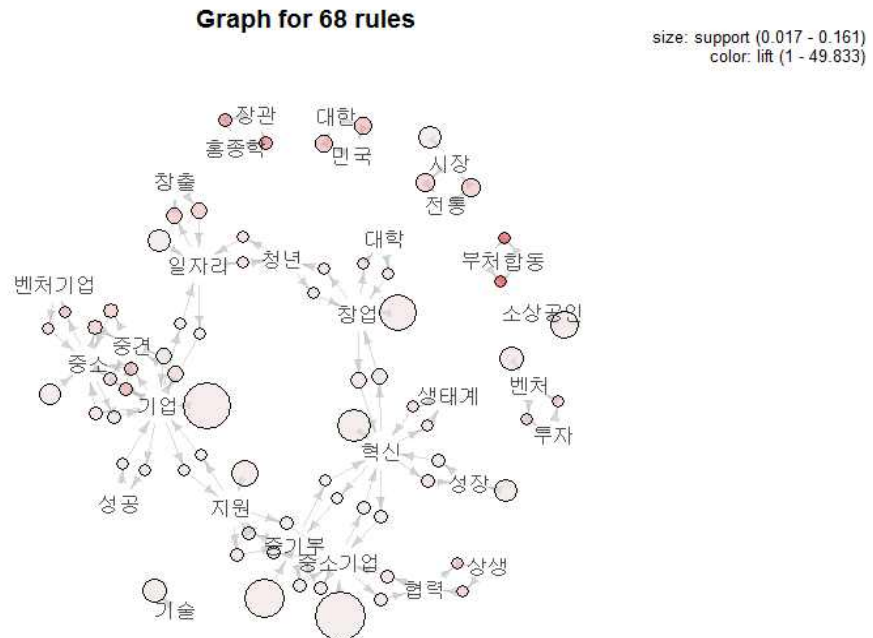
[그림 IV-5] 박근혜 정부 연관규칙분석 결과



본격적으로 창업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의 분석 결과, 47개의 연관규칙이 도출되었다. 앞선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연관관계가 나타났던 반해, ‘중소’, ‘중견’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수출’, ‘글로벌’ 등과 ‘기술’, ‘개발’ 등이 연결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와 ‘전통’-‘시장’,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의 연관규칙이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부가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을 실시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업’을 중심으로 한 원의 크기를 볼 때, 벤처창업 및 성공창업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6] 문재인 정부 연관규칙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연관규칙분석 결과에서는 68개의 규칙이 도출되었으며, 창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유기적인 연결을 보여준다. 주요 키워드로 ‘중소기업’, ‘혁신’, ‘기업’, ‘창업’, ‘일자리’ 등이 연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은 ‘혁신’을 포함하여, ‘상생’-‘협력’, ‘기업’-‘지원’ 등과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은 앞선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소’, ‘중견’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일자리’와의 연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는 ‘청년’, ‘창업’ 등과 ‘창업’은 ‘혁신’, ‘대학’, ‘청년’ 등과의 연관성을 보였으며, ‘혁신’은 ‘창업’, ‘중소기업’, ‘생태계’, ‘성장’ 등과의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던 ‘벤처’-‘투자’와 이전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추출되었으며, 이전 정부와 달리 ‘부처’-‘합동’의 연관어도 제시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전 정부들과 달리 다양한 키워드 간에 유기적 연
관관계가 도출된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상생협력, 혁신생태계,

일자리창출 등 현 정부의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함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벤처투자 강화 등의 정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단독이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창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통한 창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을 육성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창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객관적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창업생태계를 진단함과 동시에,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의 창업환경은 창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복잡한 규제들로 인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확장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측면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초기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이 혁신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창업가에 대한 인식 등 문화적 측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창업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적 도전이 활발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창업기업의 생멸 및 성장 측면에서 창업생태계의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수준으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창업에 국한된 지원으로 인해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성장주기별로 고른 정부지원을 실시하여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창업지원정책은 과거 3개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체계화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 정부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추진되었던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며 생태계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체계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내 창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각적 측면에서 국내 창업생태계를 진단하고, 정부의 창업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면, 이러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텍스트마이닝 분석 시,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전문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창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함축된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자료만을 추출하고,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여 창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창업생태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창업환경, 기업가정신, 기업생멸, 기업성장 등 제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통계를 인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생태계와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을 통해 창업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창업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개석, 이종건(2017), 창업지원제도의 국가별 효과성 비교: 창업정책과 창업가정신지수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제7권, 제1호, pp.77-86.
- 김미성, 김남규, 안재현(2012), 연관규칙마이닝에서의 동시성 기준 확장에 대한 연구. *지능정보연구*, 제18권, 제1호, p.23-38.
- 박상규, 김대수, 손희영(2018),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창업기업 제품의 재구매 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97-217.
- 박혜영(2015), 중국은 지금, 꽃 보다 창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ICT Spot Issue 2015-03, pp.1-12.
- 성창용, 정호연(2016),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성공요인 분석, *한국창업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49-167.
- 신동평, 배용국, 손석호(2018),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현재와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FISTEP Issue Weekly*, 통권 제226호.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p.1537-1557.
- 정길호, 김병근(2017), 창업환경 요소가 기술경쟁력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창업자역량, 조직문화, 외부협력, 창업지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32-255.
- 창업진흥원(2017), 기술기반창업의 범위 및 경제적 효과 연구.
- 최하영, 고남욱, 윤장혁(2015), 연관규칙분석을 활용한 융합 기술 기회 발굴 방법론,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870-874.
- 통계청(2016),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17.12.14.
- 한성수, 양동우(2017),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창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5호, pp.1-12.
- Agrawal, R. and R. Srikant(1994), Fast algorithms for mining association rules. in *Proc. 20th int. conf. very large data bases, VLDB*.

- Baron, R. & Shane, S.(2005).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OH: South-Western Publishing.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2015),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
- Gartner, W. B.(1989).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14), 47-68.
- GEDI(2017), Th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8,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Washington, D.C., USA.
- World Bank(2018), Doing Business 2018 : Reforming to Create Jobs, World Bank Group.
- Peter Drucker(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and Row.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Vol.55), Transaction publishers.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 Tony Bailett(2012), Technology Entrepreneurship: Overview, Definition, and Distinctive Aspect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February.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임금근로자와 비교를 중심으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김수동(경영학박사), sudong.kim@semas.or.kr
이철성(경영학박사)

본 연구에서는 부채와 건강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KWPS) 중 '17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높을수록 개인의 건강상태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높을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부채와 개인 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 흐름에 일조하였다.

I. 서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범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을 지칭하나, 국내 전체 사업체 비중에 약 86.4%(통계청, 2015)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경제적 역할과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OECD와 같은 국제 통계 및 국내 통계 지표에는 주로 자영업자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6%(김철민, 신승만, 2015)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두 가지 개념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OECD data(2018)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7년을 기준으로 25.4%로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 6.3%에 비하여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고용에 있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높은 자영업자 비중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재무적 취약성,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로 인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류이근, 2017). 한국은행(2018)에 따르면 예금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10조 4,000억 원(2015년 1월 기준)에서 290조 3000억 원(2018년 1월 기준)으로 약 3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나이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354조 5926억 원에서 2016년 520조 1,420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류이근, 2017). 이와 함께 가계부채 1,344조원 중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증가율은 46.7%에 이른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건강 간의 관계는 오랜 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Adler and Ostove(1999)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으로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s Status: SES)는 정서와 인지를 포함한 심리적 기제에 영향을 미쳐 건강과 관련된 활동 및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부채는 불안감

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스트레스,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coby, 2002). 예를 들어 부채가 증가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예: 체육활동, 질 좋은 음식 섭취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불안 수준이 커짐에 따라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 (예: 흡연, 과음 등)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는 적극적인 채무 변제 활동을 줄일 뿐 아니라,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다시금 재정상태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다.

과거 연구에서는 가계 부채와 건강 간의 관계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진행되고 있다(김시월, 조향숙, 김미리, 2015). 더불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드물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부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영업자(Self-employed with employees)와 소상공인

자영업자(Self-employed with employees)와 소상공인은 서로 대체 또는 혼용되는 개념이며(윤성옥, 서근하, 2007; 임영균, 2011; 정남기 2017 등), 많은 연구들에서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영균, 2011; 김철민, 신승민, 2015; 이철성, 김영기, 김승희, 2017 등).

먼저 자영업자라는 개념은 OECD(2017)에서 “고용인의 고용, 스스로의 노동자, 생산자의 협력 인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로 정의한다(이철성, 김영기, 김승희, 2017 재인용). 반면, 소상공인은 국내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란 『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첫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둘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칭한다. 더불어 『중소기업기본법』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따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부동산업은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를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분에 대하여 김철민, 신승민(2015)은 법률적 측면, 사업자 유형, 조사 방식, 국가 간 비교 가능 여부의 네 가지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법률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인 반면, 자영업자는 법률적인 정의가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의 개념상 차이를 설명하면, 자영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에 의해 정의되었지만, 자영업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연구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다(<표 2-1참조>). 통계청(2018)에 따르면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Employer 이하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Own account worker 이하 자영자)를 합친 개념”이다. 이중 자영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용주는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로 구분될 수 있다.

<표 II-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의	- 통계청(2018):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자기 혼자 사업 하는 사람 - OECD: 통계청 기준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모	- 자영업자: 562만명(2015) 568만명(2017)	- 종사자 수 604.6만명(2015) - 사업체 수 360.5만개(2015)

출처 : OECD(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통계청(2015a),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5b),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2017),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8),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사업자 유형으로 구분하면,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만을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철민, 신승민(2015)은 자영업자를 세법상 개인소득 대상자라 하였으며 따라서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에 한정된다. 반면, 소상공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구분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에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더불어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분류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거나 타인을 고용한 개인사업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의 지위를 갖는 것이 자영업자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는 조사가 가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함께 노점상, 이동형 판매자 등과 같이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소상공인은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만 조사대상이 된다(김철민, 신승민, 2015). 마지막으로 서용구, 김숙경(2012), 김철민, 신승민(2015), 이철성, 김영기, 김승희(2017) 등이 지적인 바와 같이 국가별 비교는 자영업자만 가능하다. 이는 국가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각국의 중소기업법에 따라 규정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며(이철성, 김영기, 김승희, 2017),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서용구, 김숙경,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법에서 명시한 상시 근로자 수 5~10인 미만인 자를 뜻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군으로 볼 수 있으나,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비중에 약 86.4%, 종사자 수 비중은 약 37.9%를 차지한다(통계청, 2015b). 또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소상공인 평균 창업 수는 약 2백 7십만 개로 전체 업체 창업 대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년 간 약 72%에 이른다(통계청, 2017). 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 국내외 우수 기업의 시작은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성옥, 서근하(2007)는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 자영업자와 부채

부채는 경제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 증가를 위한 유동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를 제약하는 채무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강종구, 2017). 강종구(2017)에 따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소비 목적으로서 가계 차입은 직접적으로 총소비에 증대를 높이고, 간접적으로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가계부채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갈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제약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2016)에 따르면 부채가 현재 자산 증가를 통해 향후 소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인 유동성 제약 완화 경로와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인 채무부담 증대 경로로 파악될 수 있다(<표 2-2> 참조)

<표 II-2>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

구분	세부 구분	상세 경로
긍정적 효과	차입비용 감소	저금리 기조 ➡ 차입비용 감소 ➡ 대출량 증가 ➡ 소비구매력 증가 ➡ 소비 증가
	생활 목적 대출 증가	저성장 ➡ 가계의 소득 성장 부진 ➡ 소비 목적 대출 증가 ➡ 소비 증가
부정적 효과	DSR 상승	부채 증가 ➡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 DSR 상승 ➡ 소비 구매력 위축 ➡ 소비 감소
	분할 상환 대출 증가	정부의 정책으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 증가 ➡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 소비구매력 위축 ➡ 소비 감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6),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6(46).

먼저,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Bacchetta and Gerlach (1997), Cecchetti, Mohanty, and Zampolli(2011)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높은 레버리지를 취한 가구는 예상치 못한 소득 하락이나 거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할 때 부채 탕감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Guiso and Sodini, 2013; Jappelli and Pagano,

1989).

일례로 한국은행(2018)이 발표한 국내 금융기관 가계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신용 부채는 '17년 기준 약 1,45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판매 및 외상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신용 역시 약 80,790조원으로 11.62%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약 1,370조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59%가 증가하여 저금리 기조가 전반적인 대출수요 확대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 -3> 가계 신용현황 (부동산 담보대출 제외)

구분	'12	'13	'14	'15	'16	'17
가계신용 (조원)	963.79	1,019.04	1,085.26	1,203.10	1,342.53	1,450.85
전년 대비 증감률 (%)	5.20	5.73	6.50	10.86	11.59	8.07
가계대출 (조원)	905.94	960.58	1,025.08	1,137.95	1,269.81	1,370.06
전년 대비 증감률 (%)	8.52	5.17	6.03	6.71	11.01	11.59
판매신용 (조원)	57.85	58.46	60.18	65.15	72.72	80.79
전년 대비 증감률(%)	10.85	5.62	1.06	2.95	8.25	11.62

출처 : 한국은행(2018), 가계신용동향, Retrieved from <http://ecos.bok.or.kr>.

가구의 특성에 따른 부채와 자산 및 가치분 현황을 보기 위해, 한국은행(2018)에 따르면, 금융부채보유비중은 평균 68.8%이며, 고용형태 순을 살펴보면 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12.7천만원이며, 고용형태 순으로 살펴보면 고용주, 자영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주의 부채 규모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가구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배 가까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영업가구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재무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경기가 장기적인 저성장분위기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부채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경제를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Guiso and Sodini, 2013).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자영업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장기적인 경제활동 위축이 올 수 있다.

<표 II -4> 자영업 가구와 비자영업 가구의 부채 현황

구분			'12	'13	'14	'15	'16	'17
금융부채 보유비중 (%)	자영업 가구	고용주	81.3	78.6	79.6	77.2	78.7	77.9
		자영자	65.4	68.1	65.9	64.2	64.4	62.6
	임금 근로자 가구	상용직	70.4	69.8	69.3	66.9	66.3	65.8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천만원)	자영업 가구	고용주	19.1	19.1	18.1	18.2	18.4	20.5
		자영자	6	7.1	7.8	8.3	8.7	8.8
	임금 근로자 가구	상용직	5.3	5.9	6.2	7.2	7.8	8.7
연체 경험 가구 비중 (%)	자영업 가구	고용주	14.84	18.02	15.24	11.36	7.03	8.53
		자영자	17.59	17.73	15.62	14.89	11.2	8.77
	임금 근로자 가구	상용직	8.85	10.67	10.15	8.43	5.74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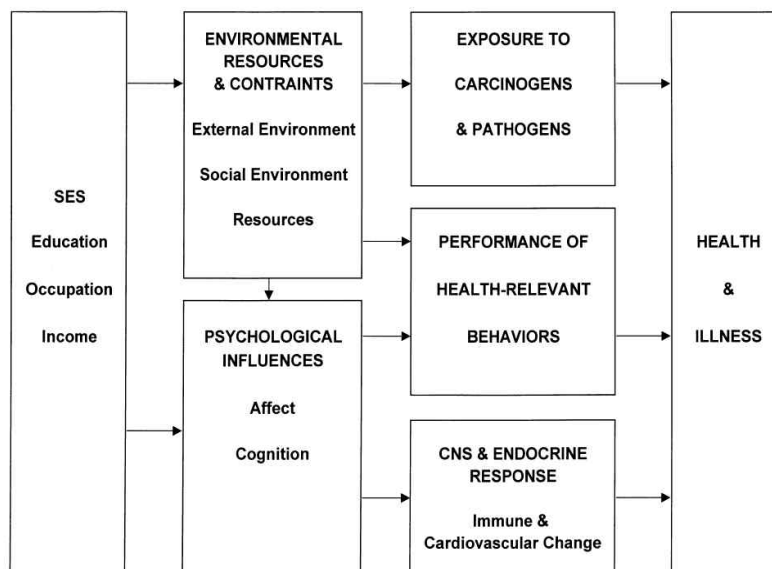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Retrieved from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HF>.

3.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과의 관계

사회·경제적 위치(Social Economic Status: SES)는 임금 또는 소득에 의한 경제적 위치, 교육 수준 등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업종에 따른 근로적 위치가 합쳐진 개념이다(Dutton and Levine, 1989). 과거 연구 수많은 연구에서 임금 교육을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 오고 있다. 이러한 경로에 대해 Adler and Ostrove(1999)는 사회·경제적 위치의 차이는 개인자체의 인지적 생리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 및 생활환경과 같은 대외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저임금, 저숙련 노동과 같은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는 빈곤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위치는 직·간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II-1] 사회경제적위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로



출처: Adler, N. E., and Ostrove, J. M. (1999).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What We Know and What We Do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1), 3-15.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연구는 소득의 개념을 확대하여 부채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Reading and Reynolds, 2001; Clayton, Liñares-Zegarra, and Wilson, 2015). 먼저, Münster et al. (2009)는 2006년과 2007년 사이의 949명의 과도한 부채자들을 대상으로 BMI 상태를 살펴본 결과 부채 상태는 신체적 건강(과체중 및 비만)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부채에 대한 걱정은 우울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ridges and Disney, 2010; Reading and Reynolds, 2001). 이와 유사하게 Grafova(2007)은 1999-2003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채와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Gathergood(2012)는 높은 부채로 인한 부정적 심리적 효과는 과도한 부채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Keese and Schmitz(2014)도 건강상 문제가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인과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건강상 문제로 인해 직업을 상실한 케이스를 제거하고 부채와 건강 간의 관계를 관찰해본 결과, 가계 부채와 건강상 만족, 정신상 건강, 그리고 비만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layton, Liñares-Zegarra, and Wilson (2015)의 연구에서도 부채의 기간에 따라 건강 상태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단기 및 중기 부채는 건강상 문제와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장기적 부채 증가는 건강상 문제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들은 단기 및 장기 부채는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 부채는 지속적인 부채로 인해 미래의 전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서 정서적 부담이 가중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부채 수준 보다는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 정도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Sweet, et al.(2013)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자산 대비 부채 수준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상과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김시월, 조향숙, 김미리(2015)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부채와 우울증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부채상환비율(DTI)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채상환능력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직접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흡연이나 과음과 같은 건강 유지에 부정적인 행동을 높여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 또는 부채상환능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경제 주체의 특성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사회·경제적 또는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특성적 차이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성, 도전, 자아실현 등과 같은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vans and Leighton, 1989; 임영균, 2011). 반면, 직업만족도는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우영, 김응규, 2001). 이는 외환위기라는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자영업이 선택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전병유,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영업을 자발적 선택과 비자발적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영업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에서는 자영업자의 긍정적인 측면인 자율성, 도전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Evans and Leighton, 1989; Blanchflower and Oswald, 1998),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영균, 2011). 반면 자영업의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자영업 선택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할 것이다. 먼저 직무상으로는 임금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한정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경영자와 동일하게 사업체, 직원, 작업의 세 가지 직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Drucker, 2006). 따라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높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arborough, Zimmerer, and Naumes, 2005). 더불어 임금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미래 소

득을 예측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이러한 소득예측이 어려우며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실패에 따른 실직위험이 높다(Bygrave, 2014). 따라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소득 대비 부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고용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가설 2-2: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고용형태(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별 연간소득 및 금융기관 대출액 현황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TATA MP 12.1을 활용하였으며, 주효과와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 Aiken and West(1991)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래프 상에 해당 변인의 평균인 경우 “보통”으로 표시하였고, “고”와 “저”의 수준은 각각 1표준편차 상위 지점과 1표준편차 하위 지점을 표시하였다.

III. 실증 분석

1. 연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 중 12차 년도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국민실태조사에 참여한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표집한 후, 소득계층별로 다시 층화하여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 목적에 맞추기 위해 12차 년도 가구용 데이터 6,581개 케이스 중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로 좁히고, 이들의 소득에 대한 무응답치는 제외시켰다. 또한 상용근로자 중 응답한 연간 임금이 2017년도 최저임금 적용금액인 연간 약 1,623만원보다 적은 케이스는 제거하여 총 2,131명(임금 근로자=1,419, 고용주=158, 자영자=554)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건강상태이며, 독립변수로는 소득 대비 대출비중(금융 대출액/연간 매출액), 고용형태, 그리고 고용형태와 소득 대비 대출비중 간의 상호작용 변수이다.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 금융 대출액, 연간 매출액(임금 근로자의 경우 연간 임금), 업종, 만성질환 정도, 소득 수준, 장애여부, 이자 및 배당금 연간소득, 임대료 연간소득 기타 연간소득을 두었다. 매출액 등 단위가 금액인 경우 로그 변수를 취하였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간 매출액은 4,682.57만원이며 금융기관 대출액은 4,345.68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고용형태별에 대한 내용은 <표 3-1>에 기술하였다.

<표 III-1> 고용형태별 연간 매출액 및 금융기관 대출액(단위: 만원)

고용형태	표본수	연간 매출액(또는 임금)		금융기관 대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금근로자	1,418	5,044.66	2,564.95	4,522.44	7,833.14
고용주	158	7,804.13	11,660.79	6,532.57	12,212.53
자영자	554	2,871.02	2,693.46	3,277.39	9,183.79
전체	2,130	4684.00	4237.31	4345.68	8625.01

고용형태 별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만성 질환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 집단에 비해 자영자는 건강 상태와 만성 질환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표 3-2> 참고).

<표 III-2> 고용형태 별 건강 상태 및 만성 질환 현황

고용형태	표본수	건강 상태(5점 만점)		만성질환(4점 만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금근로자	1,418	4.00	0.66	3.11	1.30
고용주	158	3.91	0.66	2.95	1.38
자영자	554	3.65	0.81	2.38	1.46
전체	2,130	3.90	0.72	2.91	1.39

2. 연구가설 검증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회귀분석을 통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해본 결과, 소득 대비 대출비중(4.01), 연간소득(3.64), 대출(2.11),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1.05), 임금 근로자 대비 고용주(1.15)로 다중공선성 기준인 1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중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수만을 회귀식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며, 종속변수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이학식, 임지훈, 2014).

$$Y_{\text{건강상태}} = \beta_0 + \beta_1 \text{소득대비대출비중}(A) + \beta_2 \text{대출액} + \beta_3 \text{소득} + \beta_4 \text{고용형태} \text{더미1}(B1) + \beta_5 \text{고용형태} \text{더미2}(B2) + \beta_6 A \times B1 + \beta_7 A \times B2 + \epsilon$$

* 고용형태더미: B1(임금근로자 VS 고용주), B2(임금근로자 VS 자영자)

** 통제변수들은 현재 수식에서 생략

건강상태에 대한 소득 대비 대출비중 간의 주효과와 고용형태별의 조절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1단계인 통제변수와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출액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beta=.005$, $p=.81$), 연간소득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beta=-.04$, $p=.06$). 또한 주요 소득 외 이자배당금 ($\beta=.01$, $p=.65$), 임대료($\beta=-.02$, $p=.26$), 기타 연간소득($\beta=-.03$, $p=.16$)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단계 방식을 살펴보면 건강상태와 소득 대비 대출비중 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beta=-.10$, $p=.02$), 소득에 비해 대출이 높을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와 근로상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주($\beta=-.003$, $p=.99$),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자($\beta=.014$, $p=.53$) 간의 관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소득 대비 대출비중의 관계에서 고용형태의 상호작용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자($\beta=.83$, $p=.18$)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주($\beta=-.83$, $p=.0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참고로 표준화 회귀계수 β 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시킨 것을 의미하며, p 는 유의확률(p -value)로 유의수준보다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14).

<표 III-3> 소득 대비 대출비중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고용형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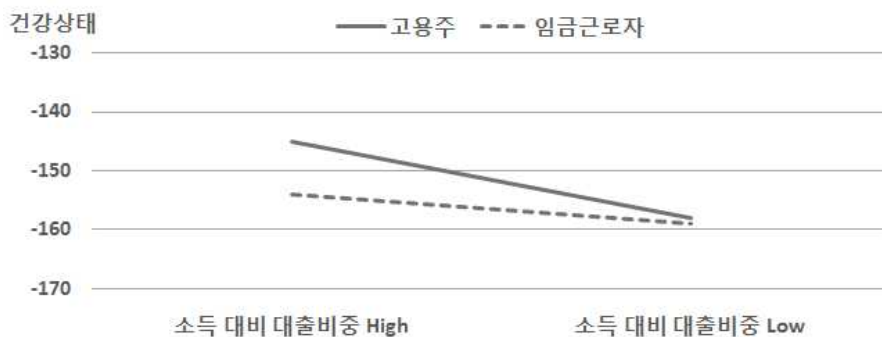
예측변인	1단계 모형 (통제변인)			2단계 모형 (주효과)		3단계 모형 (상호작용효과)				VIF
	비표준 화계수 (B)	표준 오차 (Std. Err)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 화계수 (B)	표준 오차 (Std. Err)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 화계수 (B)	표준오차 (Std. Err)	표준화 계수 (β)	
소득 대비 대출비중(b) (log)				0.71	0.33	0.09*	2.58	1.28	0.31*	4.01
상호작용1 (a1xb)							2.22	1.05	0.80	
상호작용2 (a2xb)							-1.26	1.01	-0.78*	
대출액(log)				-0.10	0.06	-0.05	-0.30	0.12	-0.15*	2.11
연간소득 (log)				0.30	0.12	0.10**	0.58	0.16	0.20***	3.64
이자배당금 (log)				-0.82	1.06	-0.02	-1.07	1.07	-0.02	
임대료소득 (log)				0.49	0.35	0.03	0.51	0.35	0.03	
고용더미1 (a1: 임금, 고용주)				0.02	0.06	0.01	-2.19	1.05	-0.80*	1.15
고용더미2 (a2: 임금, 자영자)				-0.02	0.04	-0.01	1.24	1.00	0.76	1.05
만성질환	0.15	0.01	0.29***	0.15	0.01	0.29***	0.15	0.01	0.29***	
생년월일	21.39	2.90	0.18***	21.24	3.05	0.18***	20.64	3.05	0.17***	
소득별 가구	-0.26	0.07	-0.09***	-0.21	0.07	-0.07** *	-0.21	0.07	-0.07**	
장애유무	-0.03	0.01	-0.04**	-0.03	0.01	-0.04*	-0.03	0.01	-0.04*	
업종(20개)*	포함									
시도 (7개)*	포함									
F-value	21.18***			17.39***		16.75***				
R2	.226			.230		.233				

† p<.10, * p<.05, *** p<.01, **** p<.001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체계의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 제외)이며, 시도는 7개 권역(12차 한국 복지패널조사 조사설계서 참고)을 의미하며, 주요 변수가 아닌 통제변수라는 점에서 해당 계수는 생략

보다 세부적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주와 소득 대비 대출비중 간의 상호 작용이 유의함에 따라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1] 참조). 임금근로자는 소득 대비 대출비중의 변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가 적은 반면, 고용주는 소득 대비 대출비중 변화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가설 지지여부는 다음 <표 3-4>과 같다.

[그림 III-1] 건강상태와 소득 대비 대출비중의 관계에서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표 III-4> 가설 지지여부

가설		지지여부
가설 1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1	고용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기각
가설 2-2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지지

IV. 결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매우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고용의 25.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차이와 이로 인한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개인의 부채가 아닌 소득 대비 대출비중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과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높을수록 개인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부채와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흐름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부채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고용형태(임금근로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조절적 역할이 일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높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대출상환능력과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 부족은 단순히 사업체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가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의 재무상태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함께 개인의 건강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국민건강 차원으로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하여 임금근로자는 고용상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 근로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건강상태의 변화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기존 임금

근로자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기존 부채규모 또는 부채상환능력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연구 흐름에 일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부채에 대한 상황능력, 다시말해 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부채와 개인의 건강 간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연구 흐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자영업자 대상 연구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이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비교하여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외생변수들을 고려한 시계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채상환능력을 단순화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소득, 다시 말해 연간매출액 대비 대출액을 중심으로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은 총부채 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구 (201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5, 1-30.
- 김시월, 조향숙, 김미리 (2015). 가계부채가 노인 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비문화연구, 18, 21-38.
- 김우영, 김응규 (201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29-54.
- 김철민, 신승만 (2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小考: 비판적 고찰, 산업혁신연구, 31(4), 175-205.
- 류이근 (2017) ‘자영업자 대출, 가계부채 3분의1 넘어...“폭탄 터질라”, 한겨레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88355.html#csidx32dc4d803d0641d8b706b6916cae554>(2018-08-17 방문)
- 서용구, 김숙경 (2012). 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유통연구, 17(5), 39-57.
- 윤성옥, 서근하 (2007). 한국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력, 중소기업연구, 29(4), 365-293.
- 이민화, 이현숙 역 (2013). 기업가정신, 동서미디어; 서울.
- 이철성, 김영기, 김승희 (2017). 외식산업 소상공인의 식재료비 영향요인에 대한 탐험적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20(5), 101-110.
- 이학식, 임지훈 (2014). SPSS 20.0 매뉴얼, 집현재; 서울.
- 임영균 (2011).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어떻게 다른가, 유통연구, 16(5), 141-169.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정남기 (2017). 핀란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 분석, 질서경제저널, 20(1), 27-43.

- 정호성 (2018).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5호, 1-38.
- 조규림 (2016).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주평, 16(46), 1-10
- 통계청 (2015a).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
- 통계청 (2015b).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7a).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18).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 통계청(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Retrieved from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HF>.
- 한국은행(2018), 가계신용동향, Retrieved from <http://ecos.bok.or.kr>.
- Adler, N. E., and Ostrove, J. M. (1999).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What We Know and What We Do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1), 3-15.
- Aiken, L. S., West, S. G., and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lanchflower, D. G. and Oswald, A. J. (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 Bridges, S., and Disney, R. (2010). Debt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9(3), 388-403.
- Bygrave, William D. and Andrew Zacharakis (2014). *Entrepreneurship*, Third Edition, JOHN WILEY & SONS LTD.
- Cecchetti, S. G., Mohanty, M., and Zampolli, F. (2011). Achieving Growth Amid Fiscal Imbalances: The Real Effects of Debt. In *Economic Symposium Conference Proceeding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352, 145-96.

- Clayton, M., Liñares-Zegarra, J., and Wilson, J. O. (2015). Does Debt Affect Health? Cross Country Evidence on the Debt-health Nexus. *Social Science & Medicine*, 130, 51-58.
- Dutton, D. B., and Levine, S. (1989). Overview, Methodological Critique, and Reformulation. *Pathways to Health*, 29-69.
- Evans, D. S. and Leighton, L. S. (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 Gathergood, J. (2012). Debt and Depression: Causal Links and Social Norm Effects. *The Economic Journal*, 122(563), 1094-1114.
- Grafova, I. B. (2007). Your Money or Your Life: Managing Health, Managing Mone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2), 285-303.
- Guiso, L., and Sodini, P. (2013). Household Finance: An Emerging field.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Finance*, 2, 1397-1532, Elsevier.
- Iacoviello, M. (2005). House Prices, Borrowing Constraints, and Monetary Policy in the Business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95(3), 739-764.
- Jappelli, T. and Pagano, M. (1989). Consumption and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88-1105.
- Kennelly, B., O'Shea, E., and Garvey, E. (2003). Social Capital, Life Expectancy and Mortality: A Cross-national Examin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6(12), 2367-2377.
- Münster, E., Rüger, H., Ochsmann, E., Letzel, S., and Toschke, A. M. (2009). Over-indebtedness as a Marker Of Socioeconomic Status and Its Association with Obesity: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9(1), 286.
-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Paris; OECD publishing.
- OECD Data (2018). *Employees by Business Size*, Retrieved from <https://data.oecd.org/entrepreneur/employees-by-business-size.htm>.
- Reading, R., and Reynolds, S. (2001). Debt, Social Disadvantage and Maternal

-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3(4), 441-453.
- Scarborough, N. M., Zimmerer, T. W., and Naumes, W. (2005). *Effective Small Business Management*, 8/e.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Sweet, E., Nandi, A., Adam, E. K., and McDade, T. W. (2013). The high Price of Debt: Household Financial Debt and Its Impact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91, 94-100.
- Walsemann, K. M., Gee, G. C., and Gentile, D. (2015). Sick of Our Loans: Student Borrowing and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124, 85-9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부
박찬명(경영학박사), pcmlkj@koreg.or.kr

본 논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본인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외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잔액 순증액은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위 변제액 순증액은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상채권상각액은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자수의 증가는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내·외부적 환경을 감안하여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I. 서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와 고용 등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현황(2016년)」에 따르면 2014년 말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중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54만 여개로 99.9%, 종사자 수는 1,342만여명으로 87.5%의 비중을 보이며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국내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자본력은 매우 미약하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충분한 담보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은 담보위주 여신관행의 금융시장에 접근이 제한적이며, 자금조달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미래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평가도 쉽지 않다. 특히, 초기 기업, 소규모 기업, 기술 집약형 혁신 기업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민간금융회사의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종주, 2014).

특히 정부가 저성장의 늪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기본재산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회계제도 및 기본재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신용보증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재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특성 요인을 회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대안과 미래의 신용보증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연구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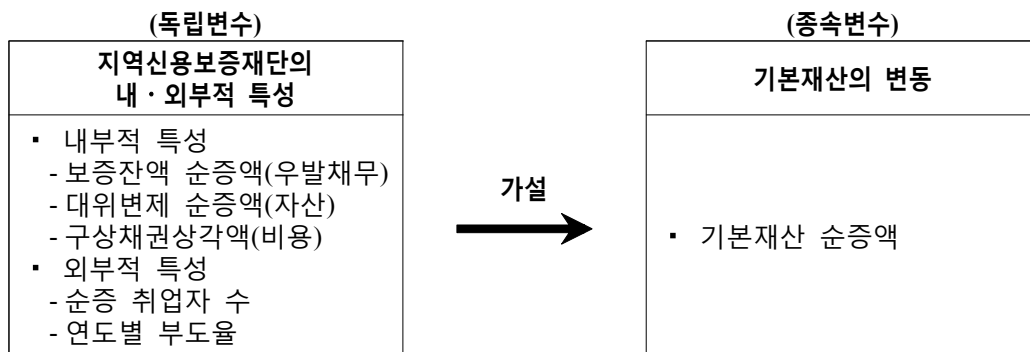
1. 연구 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구축

본 논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결산 재무제표를 자료로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통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유출입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유출입이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로 보증잔액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반증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취약성과 급격한 기본재산 이동에 따른 반복된 위기 상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통해 해결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본재산 유출입의 통제에 대한 근거는 김소영 외(2014)에서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를 들고 있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인 부채비율, 자산, 기업규모, 이익 유연화 등과 같은 변수가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려는 회계선택을 할 것이다(박희우와 신현걸, 2004). 즉, 기업은 자기자본 조달을 위해 회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기업의 회계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자기자본 조달 계획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윤선주와 고재민, 2015). 또한 배길수와 정진호(2000)는 이러한 자본유출입 중 자본조달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수은과 신민식(2011)은 거시경제상태가 자본구조의 조정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그 내·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II-1] 연구 모형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지역신용보증제도는 16개 시·도에 각각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기본재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내부에서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증월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에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보증 자료, 기본재산 관련자료 등 176개 표본을 활용한다.

또한,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에 있어 기본재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기관의 내부특성 자료인 보증잔액 순증액, 대위변제 순증액, 구상채권상각액 및 기관의 외부특성 자료인 순증 취업자 수, 연도별 부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재산 순증액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개별 변수들에 대한 기초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다.

3. 가설 설정 및 검증 모형

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성을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특성으로 나누어, 내·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크게 <가설 I>과 <가설 II>로 구분하고, 각 가설에 소가설을 설정한다.

가. 내부적 특성과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가설

<가설 I>은 박희우와 신현걸(2004)이 제시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금융비용 등을 자본화하려는 회계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적 특성인 보증잔액(우발채무), 대위변제액(자산), 구상채권상각액(비용) 등이 기본재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적 특성은 기본재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 I-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순증액(우발채무)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I-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순증액(자산)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I-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구상채권상각액(비용)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나. 외부적 특성과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가설

<가설 II>는 거시경제변수가 고용시장, 가계소득 등 기업의 경영상태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며(Hackbarth 외 2005), 또한 자본충당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는 연구 결과(Korajczyk 외, 2003)에 입각하여 <가설 II-1>과 <가설 II-2>를 설정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거시경제변수 중 취업자 수와 부도율만을 고려한 것은

취업자 수와 부도율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윤상용과 김지수, 2014).

<가설 II> 지역신용보증재단 외부적 특성은 기본재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II-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순증 취업자 수는 기본재산 순증액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II-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부도율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다. 가설 검정을 위한 회귀모형 구축

1) <가설 I>의 검정을 위한 회귀모형

본 연구의 가설검정 모형으로 <가설 I>을 검정하기 위해 식(1)과 같이 회귀식을 구성하여 종속변수인 기본재산 순증액에 영향을 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적 특성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자본 잠식을 막고 보증수혜를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꾸준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BAC_{it} = \alpha + \beta_1 GB_{it} + \beta_2 + \beta_3 \Delta BOND_{it} + u_{it} + \epsilon_{it} \quad \text{식(1)}$$

, BAC_{it} = 기본재산 순증액, α = 상수항, β = 계수

, GB_{it} = 보증잔액 순증액, SUB_{it} = 대위변제 순증액

, $BOND_{it}$ = 구상채권상각액, u_{it}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특성

, ϵ_{it} =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른 특성

, i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t = 2004년 ~ 2014년

2) <가설 II>의 검정을 위한 회귀모형

본 연구의 가설검정 모형으로 <가설 II>를 검정하기 위해 식(2)와 같이 회귀식을 구성하여 종속변수인 기본재산 순증액에 영향을 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외부적 특성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본 잠식을 막고 보증수혜를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BAC_{it} = \alpha + \beta_1 EMP_{it} + \beta_2 RDF_{it} + u_{it} + \epsilon_{it} \quad \text{식(2)}$$

- , BAC_{it} = 기본재산 순증액, α = 상수항, β = 계수
- , EMP_{it} = 순증 취업자 수, RDF_{it} = 연도별 부도율
- , u_{it}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패널 개체 특성
- , ϵ_{it} =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른 특성
- , i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t = 2004년 ~ 2014년

III. 분석 결과

1. 각 특성별 추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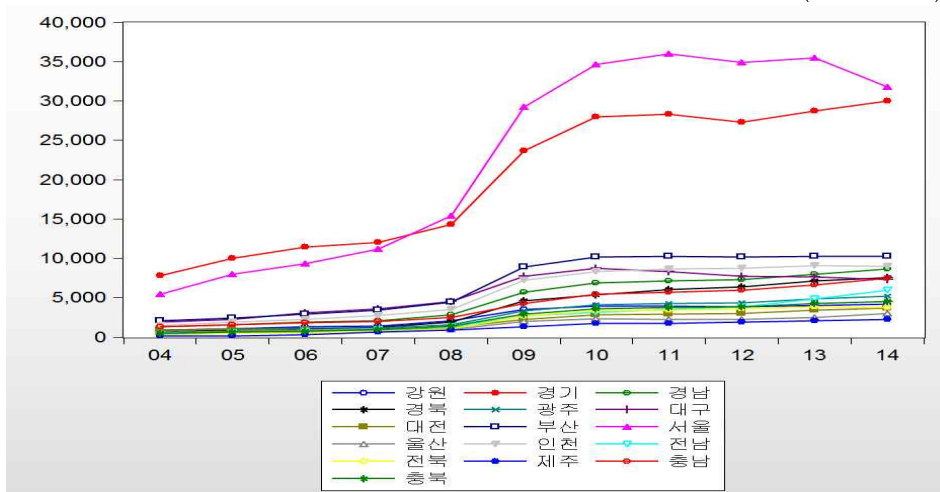
가. 내부적 특성에 관한 추이 분석

내부적 특성 중 첫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보증잔액은 2008년을 계기로 크게 상승한 모습인데, 특히 서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8년 이후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14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된 이유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보증잔액은 부채 측면의 우발채무로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잠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과 보증잔액을 관리하기 위해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관리 가능한 정도로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을 운용배수로 정하여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증가에 따른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림 Ⅲ-1] 지역신용보증재단별 보증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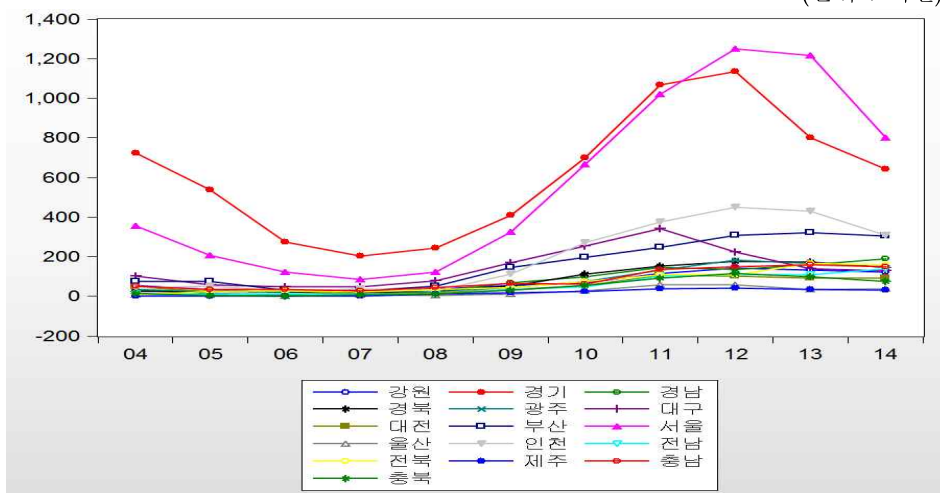
(단위 : 억원)



두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산 측면 즉, 우발채무의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보증 공급의 확대로 2012년까지 크게 상승을 보이다 이후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지역신용보증재단별 대위변제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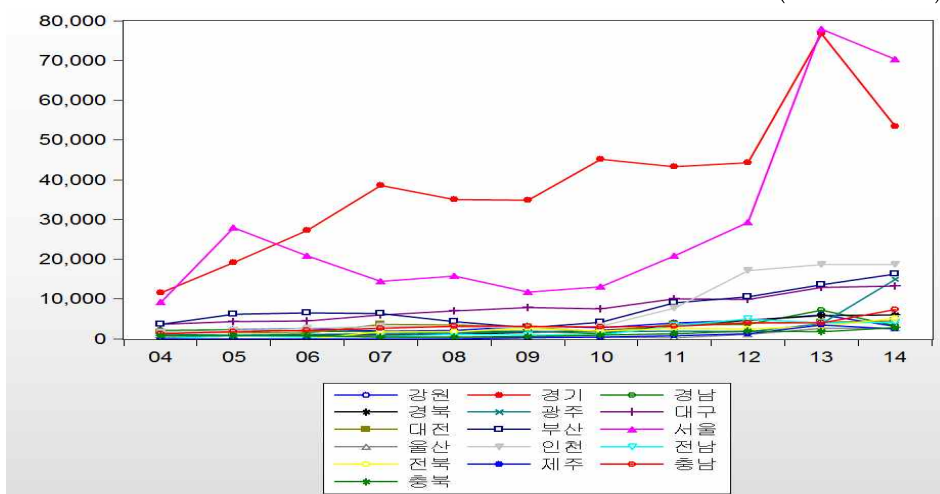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을 지원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보증의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대위변제 또한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이후 점차 국내경기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대위변제 규모가 축소되었다.

세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용적 측면의 구상채권상각 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보증수혜업체 중 대위변제를 통해 얻게 된 자산에 대한 상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4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매년 비슷한 규모의 구상채권상각이 이루어져 완만한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고 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두 재단의 구상채권상각 규모에 따라 매년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회복시켜 자본인 기본재산을 지키는 것과는 반대로 구상채권상각은 자산의 감소와 기본재산의 잠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지역신용보증재단별 구상채권상각 추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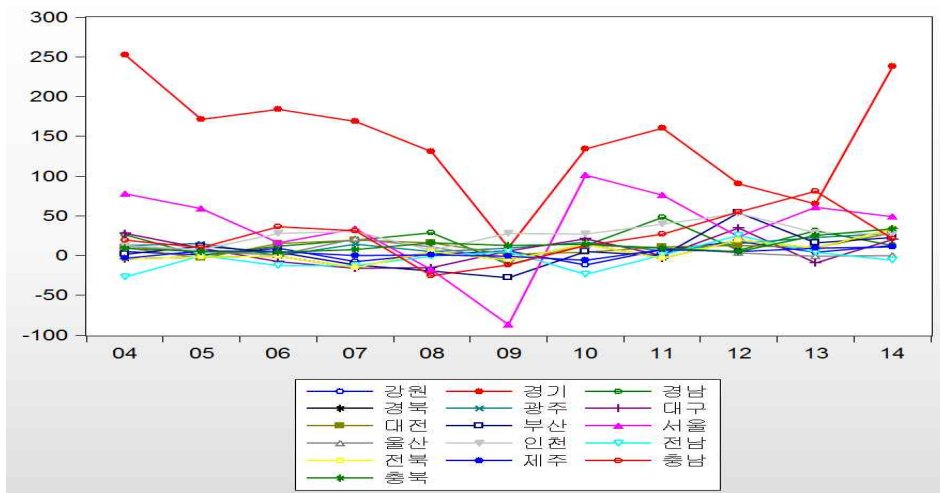


나. 외부적 특성에 관한 추이 분석

첫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외부적 특성 측면의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지역별 취업자 수는 2004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2009년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으나, 이후 경기의 부분적인 회복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나 2011년 이후 횡보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지역별 취업자 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호전되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 감소하게 된다. 취업자 수의 감소는 지역경기의 악화를 의미하며 이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보증신청 증가로 이어진다. 참고로 지역별 취업자 수는 각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호전 또는 악화의 대용변수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III-4] 지역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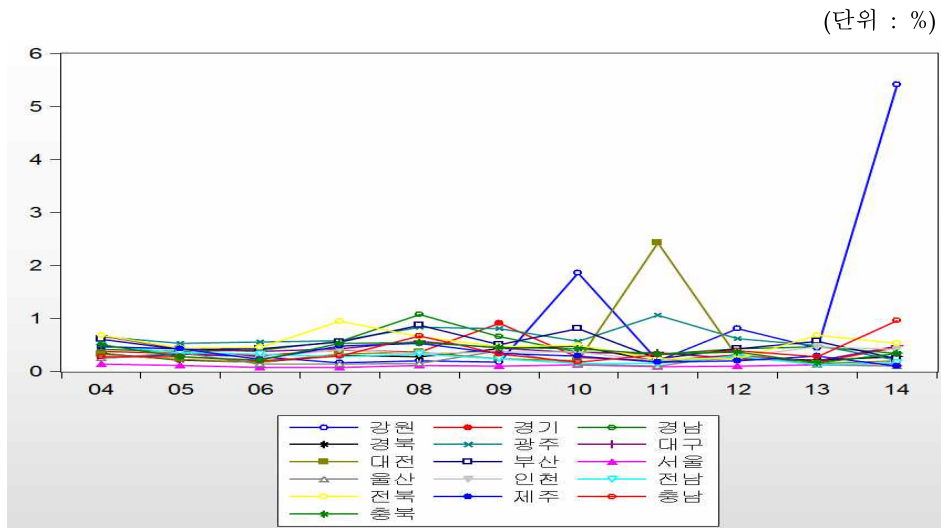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두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외부적 특성 측면 중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변수인 지역별 부도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부도율은 대부분 같은 양상을 보이나, 대전과 강원은 특정년도에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역별 부도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채의 증가인 우발채무로서 보증잔액의

증가를 일으키며, 이후 대위변제인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를 시계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III-5] 지역별 부도율 추이



다.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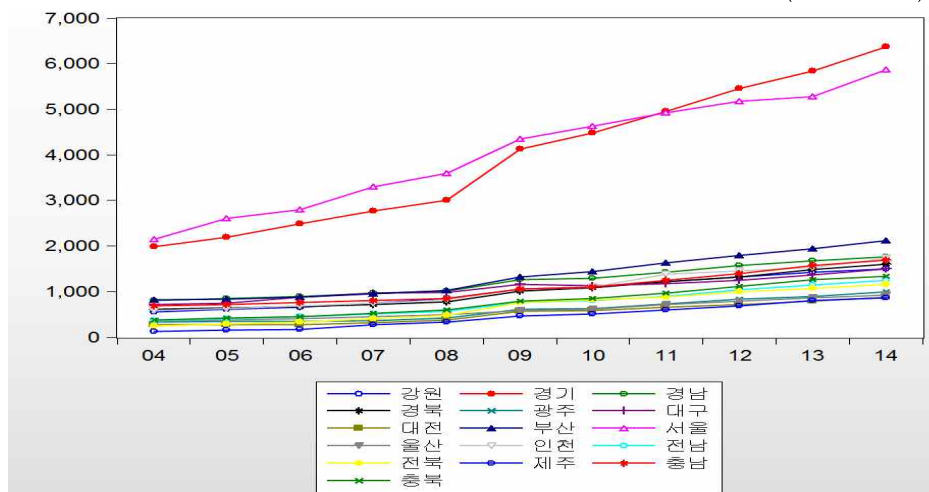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2008년에서 2009년 상승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한 정부 보조금의 확대가 반영된 것이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 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2014년 기본재산은 2004년의 3배에 가깝게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회사규모와 관계가 있으며, 서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증수혜업체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을

적정한 규모로 관리함으로써 추후 발생하는 각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III-6] 지역신용보증재단별 기본재산 추이

(단위 : 억원)



2. 가설 검정

패널회귀분석에 있어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이질성은 설명변수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므로 통상최소자승법(OLS)은 일치추정치가 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관측되지 못한 개별효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최소자승법(Pooled-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을 가설검정에 이용하였다.

가. <가설 I> 검정 :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I>에 대한 검정은 식(1)의 추정함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해 낸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이 중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통계량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카이제곱 통계량이 34.325이며,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인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두 일치추정량이지만, 확률효과가 고정효과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H_0 : cov(x_{it}, u_i) = 0$)’을 기각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 <가설 I> 검정 결과

구 분	PLS Model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Coefficient(t-value)		Coefficient(t-value)		Coefficient(t-value)	
상수항	73.479	(7.392)***	116.961	(9.727)***	73.479	(7.958)***
보증잔액 순증액	0.014	(1.847)*	0.016	(2.282)**	0.014	(1.988)**
대위변제 순증액	0.038	(0.728)	-0.089	(-1.647)*	0.038	(0.784)
구상채권상각액	0.008	(7.685)***	0.004	(3.389)***	0.008	(8.274)***
$\overline{R}^2$	0.473		0.546		0.473	
F-statistic	48.649***		11.608***		48.649***	
Durbin-Watson	1.845		2.245		1.845	
Log-likelihood	-968.712		-948.824		-	
Akaike info. Criterion	12.159		12.098		-	
Hausman Test						
	Chi-Sq. Statistic		Chi-Sq. d.f.		Prob.	
random	34.325		3		0.000	

주) ()는 p-값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첫째, 보증잔액 순증액은 t-value값이 2.282로 5%의 유의수준에서 기본재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이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보증잔액 규모가 형성되고, 운용배수는 기본재산과 보증잔액과의 역의 관계이므로 운용배수가 일정하다면 기본재산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Lemmon과 Zender(2010)가 제시한 부채수용력과 자본과의 관계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채 수용력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의 최적자본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대위변제 순증액은 t-value값이 -1.647로 10%의 유의수준에서 기본재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가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은 감소하게 된다. 대위변제의 증가는 구상채권 발생과 이로 인한 상각을 통

한 비용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즉, 현금흐름의 발생에 의해 자본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Faulkender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본조정을 가속화하여 보증잔액의 감소와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적을 위해 출연금 확충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상채권상각액은 t-value값이 3.389로 1%의 유의수준에서 기본재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상각액이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구상채권상각에 따라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출연을 전제로 한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확보하여 기본재산 증식에 나서게 된다. 그러므로 구상채권상각에 따라 기본재산이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구상채권상각은 비용을 발생시켜 자본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Baxter(1967)와 Jensen과 Meckling(1976)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와 조금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본재산 조성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특성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을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가설 II> 검정 : 지역신용보증재단 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II>에 대한 검정은 식(2)의 추정함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해 낸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이 중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통계량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표 III-2>와 같이 카이자승 통계량이 71.025이며,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인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두 일치추정량이지만, 확률효과가 고정효과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H_0 : cov(x_{it}, u_i) = 0$)’을 기각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2> <가설 II> 검정 결과

구 분	PLS Model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Coefficient(t-value)	Coefficient(t-value)	Coefficient(t-value)
상수항	109.925 (7.436)***	157.838 (13.350)***	131.545 (8.032)***
순증 취업자 수	0.811 (3.298)***	-1.919 (-6.516)***	-0.499 (-2.083)**
연도별 부도율	-15.307 (-0.691)	-0.732 (-0.043)	-4.934 (-0.297)
$\overline{R^2}$	0.053	0.525	0.006
F-statistic	5.863***	12.356***	1.562
Durbin-Watson	1.520	2.308	1.691
Log-likelihood	-1114.399	-1045.755	-
Akaike info. Criterion	12.698	12.088	-
Hausman Test			
	Chi-Sq. Statistic	Chi-Sq. d.f.	Prob.
random	71.025	2	0.000

주) ()는 p-값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형성에는 순증 취업자 수는 t-value값이 - 6.516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기본재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나 연도별 부도율은 t-value값이 - 0.043으로 기본재산 형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이는 순증 취업자 수의 증감은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지나 연도별 부도율의 증감은 기본재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취업자 수의 증가는 경기변동 요소 중 고용시장과 가계소득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경기부양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상각 등의 기본재산 감소에 작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적 특성 변수에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일 경우 기업은 영업자금의 확보를 위해 많은 자금조달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나, 호경기에 따른 출연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본재산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연도별 부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면 부도율 상승은 기본재산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취업자 수의 증가와는 반대적 의미다. 부도율의

증가는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면서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가설 I-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기본재산 구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특성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을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 통제변수를 반영한 영향 분석

<가설 I>과 <가설 II>의 설정에 의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본에 내·외부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반영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검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본 유출입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본의 유출입은 국내 경제가 호황이거나 불황일 때에 따라 기본재산구조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기본재산 구조에 따라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 공적신용보증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관은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 취약성과 급격한 자본 이동에 따른 반복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BAC_{it} = \alpha + \beta_1 GB_{it} + \beta_2 SUB_{it} + \beta_3 \Delta BOND_{it} + \beta_4 EMP_{it} + \beta_5 RDF_{it} + u_{it} + \epsilon \quad (3)$$

, BAC_{it} = 기본재산 순증액, α = 상수항, β = 계수

, GB_{it} = 보증잔액 순증액, SUB_{it} = 대위변제 순증액

, $BOND_{it}$ = 구상채권상각액, EMP_{it} = 순증 취업자 수

, RDF_{it} = 연도별 부도율, u_{it}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개체 특성

, ϵ_{it} =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른 특성

, i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t = 2004년 ~ 2014년

식(3)의 추정함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해 낸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이 중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통계량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표 III-3>

과 같이 카이제곱 통계량이 39.280이며,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인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두 일치추정량이지만, 확률효과가 고정효과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H_0 : cov(x_{it}, u_i) = 0$)’을 기각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의 실증 분석 결과 <가설 I>과 <가설 II>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첫째, 보증잔액 순증액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이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보증잔액 규모가 형성되고, 운용배수는 기본재산과 보증잔액과의 역의 관계이므로 운용배수가 일정하다면 기본재산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Lemmon과 Zender(2010)가 제시한 부채수용력과 자본과의 관계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채수용력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의 최적자본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III-3> 통제변수를 반영한 영향 분석 결과

구 분	PLS Model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Coefficient(t-value)		Coefficient(t-value)		Coefficient(t-value)	
상수항	78.395	(6.394)***	139.557	(10.638)***	78.395	(7.555)***
보증잔액 순증액	0.017	(2.207)**	0.023	(3.544)***	0.017	(2.607)**
대위변제 순증액	0.060	(1.136)	-0.041	(-0.827)	0.060	(1.342)
구상채권상각액	0.009	(8.148)***	0.005	(4.324)***	0.009	(9.627)***
순증 취업자 수	-0.692	(-2.537)**	-1.782	(-5.968)***	-0.692	(-2.998)***
연도별 부도율	-5.474	(-0.327)	-1.503	(-0.097)	-5.474	(-0.386)
R^2	0.488		0.633		0.488	
F-statistic	31.338***		14.737***		31.338***	
Durbin-Watson	1.660		2.115		1.660	
Log-likelihood	-965.397		-930.508		-	
Akaike info. Criterion	12.142		11.894		-	
Hausman Test						
Chi-Sq. StatisticChi-Sq. d.f.Prob.						
random	39.280		5		0.000	

주) ()는 p-값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둘째, 대위변제 순증액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2>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은 감소하게 된다는

가설이 추가분석에서는 대위변제의 증감은 구상채권 발생과 이로 인한 상각을 통한 비용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거시경제변수로서 취업자 수와 부도율이 대위변제의 내부변수에 영향을 주어 내부적 특성과 기본재산간의 영향관계에서 현금흐름의 발생에 의해 기본재산 순증액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게 Faulkender 외(2011)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자본조정을 가속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현금흐름의 양이 조절되어 자본축적을 위해 출연금 확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상채권상각액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상각액이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구상채권상각에 따라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기본재산 증식에 나서게 된다. 그러므로 구상채권상각에 따라 기본재산이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구상채권상각은 비용을 발생시켜 자본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Baxter(1967)와 Jensen과 Meckling(1976)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와 조금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형성에는 취업자 수는 기본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나 부도율은 기본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 수의 증가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부도율의 증감은 기본재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취업자 수의 증가는 경기변동 요소 중 고용시장과 가계소득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경기부양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상각 등의 기본재산 감소에 작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변수에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가 호황일 경우 기업은 영업자금의 확보를 위해 많은 자금조달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지역신용

보증재단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나 호경기에 따른 출연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본재산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부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면 부도율의 상승은 기본재산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취업자 수의 증가와는 반대적 측면으로 부도율의 증가는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면서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가설 I-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기본재산 구성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을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구상채권상각액, 취업자 수 및 부도율 등 변수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성해야 하겠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보증공급, 소비자물가지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과 기본재산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구성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1.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기본재산에 관한 내·외부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선행연구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보증기관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등 새로운 보증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외부적 특성이 기본재산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작성하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증통계 변수별 176개 표본을 활용하여 패널회

귀분석에 의한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적 특성인 보증잔액 순증액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위변제 순증액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상채권상각액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외부적 특성인 순증 취업자 수는 기본재산 순증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도별 부도율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셋째, 통제변수를 반영한 영향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한 분석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적 특성인 대위변제 순증액은 기본재산 순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설 I>의 결과와 조금 다르게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재산 조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외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충실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원관리시스템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자금유통 활성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신용중시 상거래 환경을 유도하고 기업의 신용관리 능력향상, 기업규모별 차별적 금융제도를 보완하고 생산증대 및 고용효과 유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설립 이래 275만여개 업체에 62조 934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2014년 한해에만 37만여개 업체에 8조 5,057억원을 지원하여 2014년 말 현재 보증잔액은 76만여개 업체에 14조 4,5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특례보증, 특별보증과 우대보증,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보증 등 고객 친화적 보증지원 상품을 개발하고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기초가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였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 내에서 발생한 시장실패로 인한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접근도를 높여준다. 즉 소상공인의 정보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담보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신용할당을 완화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보완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재보증을 통하여 지방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재보증을 신용보증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과 신용보증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가장 큰 이슈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로써 기본재산의 확충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이다.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87%를 상회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창업과 생존기간에 큰 역할(이영찬, 2011)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대출평균잔액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의 0.225%(신용보증기금), 0.135%(기술신용보증기금)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 출연금은 정부의 재량권 내에서 조성되어 예산 확보에 유동적이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증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보증지원의 경제성과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증기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무적·영업적 컨설팅으로 보증을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의 구조적 변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로 진행되면서 지역금융으로 대표되는 많은 지방은행들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역할을 강화한다면 명확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지역밀착형 금융으로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및 정책금융으로서의 추진과제 이외에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금융공기업의 회계적 관점에서 기본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자본 형성은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처럼 공공재를 판매함으로써 자본을 형성하지만 대부분 부채가 자산 보다 많아 채무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은 부채 수준이 우발채무로 발생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이 형성되므로 여타 다른 공기업과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 금융공기업의 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이론적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시계열이 짧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기업의 회계적 분석에 패널자료의 활용을 통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보증잔액의 증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잔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기본재산의 축적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우발채무에 대한 회계적 관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대위변제에 의한 기본재산 잠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위변제 예측시스템 개발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본재산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상채권상각액에 대한 기존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상채권상각액이 증가하면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구상채권상각액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수, 박하연(2015), “신용보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변수 탐색,” 「사회과학연구」, 22(3), pp.233-246.
- 김소영, 양두용, 오준범(2014),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자본자유화 지수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20(3), pp.58-104.
- 김수은(2011), “기업의 부채수용력, 현금흐름 및 거시경제상태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은, 신민식(2011), “거시경제상태가 자본구조의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공학연구」, 10(4), pp.141-172.
- 박희우, 신현걸(2004),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금융비용 자본화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산학경영연구」, 17(2), pp.41-61.
- 배길수, 정진호(2000), “자본 조달 방식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5(2), pp.1-21.
- 유종주(2014), “신용보증 지원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의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
- 윤상용, 김지수(2014), “거시경제변수가 신용보증 부실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29(4), pp.209-229.
- 윤선주, 고재민(2015), “기업의 자기자본조달 계획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20(2), pp.23-54.
- 이영찬(2011), “생존분석을 이용한 재보증 수행의 효과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40(2), pp.79-100.
- Baxter, N(1967)., “Leverage, risk of ruin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Finance, 22(3), pp.395-403.
- Cook, D. O. and T. Tang(2010),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capital structure adjustment speed”,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6(1), pp.73-87.
- Drobetz, W. and G. Wanzenried(2006), “What determines the speed of adjustment

- to the target capital structure?”, Applied Financial Economics, 16(13), pp.941-958.
- Faulkender, M., M. J. Flannery, K. W. Hankins. and J. M. Smith(2011), “Cash flows and leverage adjustmen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aryland, pp.931-962.
- Hackbarth, D., J. Miao, and E. Morrellec, “Capital structure(2005), credit risk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2(3), pp.519-550.
- Jensen, M. C. and W. H. Meckling(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pp.305-360.
- Korajczyk, Robert A. and Levy, Amnon(2003), “Capital structure choice :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ia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8(1), pp.75-109.
- Lemmon, M. L. and J. F. Zender(2010), “Debt capacity and tests of capital structure theorie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45(5), pp.1161-118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소고

- 유럽·일본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부
김인엽(차장), kiy2956@koreg.or.kr

본고는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유럽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2018년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과 일본은 최근 정보보호법제 개편을 통해 “가명정보”(EU), “익명가공정보”(일본)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둘째, 이들 국가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정보처리에 대하여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한국은 유럽과 일본의 법제 및 사회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변경 검토 중이며, 최근 국회도 이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조사연구·통계분석 부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수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시행과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다. 특히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¹⁾를 기점으로 금융분야 정보보호 관련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2015년 9월 이후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다루는 대다수 금융회사와 금융공공기관에게는 개인정보법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이 지워진 바 있다.²⁾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꽤나 긍정적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Big Data) 활용 관점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데이터 분석과 처리는 이종(異種)의 정보 간 결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정보결합을 위한 기본키(primary key)는 성명이나 주민번호와 같은 식별자인 경우가 많다.³⁾ 즉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분석결과”인 최종 산출물이 정보의 집합체로서 그간의 개인정보 속성이 전부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했다면 법 위반의 위험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위법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식별자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수행하여 개인정보 속성을 초기 단계부터 삭제한다 할지

1) 금융회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신용조회회사 직원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약 2년간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이용해 NH농협카드·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총 1억 여건을 빼돌려 대출업자에게 판매한 사건

2) “신용정보 보존기간 제한”, “동의절차 강화”, “통지권·삭제요구권 도입”,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등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 추가,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법 개정이유 참조)

3) 예컨대 A카드사 고객 데이터와 B카드사 고객 데이터 중 A카드와 B카드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의 성명,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등이 핵심키(primary-key)가 될 가능성이 높음

라도, 잔여정보 간 결합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생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적법하게 획득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법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조문을 두었는데, 이 중 이용이나 제공의 사유 또는 목적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조항은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 제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7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통계작성과 학술연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적인 정의가 법문이나 별도의 가이드라인 등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법문을 근거로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 대하여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해당기관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설사 해당기관이 법문의 입법취지⁵⁾와 자구 해석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정보제공을 결정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할 뿐,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법 소지가 존재하게 된다. 결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동 법문만을 근거로 데이터의 제공 또는 교환을 하는 사례

4)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함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994년) 이전 제정안 심사보고서(1993.12.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제한과 예외사항의 인정은 개인의 권익보호라는 측면과 원활한 행정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 바 있으며, 현행 개인정보법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취지 또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는 거의 없을 것이며, 법문이 의도한 바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는 낮으면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통계작성과 학술연구의 기회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데이터를 분석(이용 또는 활용)해서는 안 되며,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일지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반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기관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등 공공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기관(금융공공기관 포함)에서도 타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 분석은 실질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법⁶⁾의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조문과 관련된 EU의 GDPR 및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외국의 최신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입법론적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외국 입법례 검토

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5월 제정시행)

EU는 2016년 5월 27일 EU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6)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이 대동소이 하므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을 기준으로 주로 살펴볼 예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제정하였으며,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규범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이 GDPR로 대체되었는데, 종래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각 회원국의 별도 입법이 필요했던 반면 GDPR은 지침(Directive)이 아닌 법규(Regulation)로서 원칙적으로는 회원국의 개별적인 입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⁷⁾

한편 GDPR은 통일된 법 적용 및 규제가 가능한 강력한 규범인 만큼 2016년 최초 제정 이전까지 제29조 작업반⁸⁾을 중심으로 4년간 3천 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간의 정보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이동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는데,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국내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분야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GDPR과 세부 가이드라인은 향후 일종의 국제표준(global-standard)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익명처리

GDPR의 개인정보 개념⁹⁾은 우리의 법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개인 식별화

- 7) Regulation은 도달하는 방법과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유형중의 하나인 반면, Directive는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 회원국의 재량이 인정되는 까닭에 그 직접효력(direct effect)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유럽사법 재판소(ECJ)의 판례에 의해 발달해 왔다. (출처 : 외교통상부, 외교통상용어사전)
- 8) 영문 명칭은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로서, Directive 제29조에 근거하여 EU회원국 감독기구의 대표 및 EU 집행위원회,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으로 구성·설립된 정책자문기구 (출처 : 우리기업을 위한 GDPR안내서)
- 9)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주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 가능한 개인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이름이나 식별번호, 위치 정보, 온라인 식별자, 또는 해당 개인의 신체나 생리, 유전자, 정신, 경제,문화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국한된 하나 이상의 요인을 참조하여 식별될 수 있는 자이다. (GDPR 본문 제4조 제1항)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와 익명처리(anonymisation)라는 추가적인 개념을 별도로 두었다. 먼저, 가명처리는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 이상 개인정보주체에게 연계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GDPR 본문 제4조 제5항). 그러나 반대로 해석 시, 추가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가명 처리된 정보(이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된다(GDPR 해설전문 제26조). 한편, 익명처리는 정보주체를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서, 추가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익명처리된 정보(이하 “익명정보”)는 GDPR이 적용되지 않는다(GDPR 해설전문 제26조).

쉽게 말하면 ①개인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등이고, ②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대체해서 개인 식별가능성을 제거하되 개별데이터의 최소 구분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며, ③익명정보는 개인정보를 다른 추가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이 식별될 만한 요소를 전부 삭제하여 사실상 통계로서 잔존 가치만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확일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겠으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한 예시를¹⁰⁾ 들자면 아래 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1> 개인정보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구매제품	구매가격
김갑수	810101-123456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번지	오토바이	525만원
김을수	91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번지	전동킥보드	117만원
김병수	010101-345678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번지	자전거	59만원

* 구매제품과 구매가격은 개인정보 아님

10)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 해당여부는 개별국가가 정의하는 비식별 조치의 수준과 실제 데이터의 상태, 외부정보와 결합 용이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매우 단순한 예시에 불과함을 알림

<표 II-2> 가명정보 예시(표1 정보를 가명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구매제품	구매가격
김0수	81010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오토바이	525만원
김0수	91010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전동킥보드	117만원
김0수	010101-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자전거	59만원

* 구매제품과 구매가격은 개인정보 아님

<표 II-3> 익명정보 예시(표1 정보를 익명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매제품	구매가격(만원)
-	30대 / 남	서울시	오토바이	5백초과10백미만
-	20대 / 여	서울시	킥보드	1백초과5백미만
-	10대 / 남	서울시	자전거	1백미만

* 구매제품과 구매가격은 개인정보 아님 (단, 정확한 구매가격이 노출될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범주화 처리)

GDPR은 <표 II-2>와 같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정보는 별도로 보관토록 내부 감독자를 지정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한다면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이 최초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양립(compatible)한다는 전제 하에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¹¹⁾ 이 때 중요한 점이 바로 “양립가능성 판단”인데, GDPR은 추가처리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당초 수집목적과 추가처리 목적간의 연관성(link),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의 상황(context)과 개인정보의 성격,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결과 등을 양립가능성 판단의 요소로 기술하고 있다.

11) GDPR 본문 제6조제4항, GDPR 해설전문 28조·29조·50조 참조

즉 가명처리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목적 외 이용·제공은 불가능하지만, 당초 수집목적 외로 이용·제공되어도 사회통념상 적절하고 정보주체 권리침해 가능성이 낮은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종의 “가치판단”을 하고 이를 허용할지 결정해야한다는 뜻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예시와 같이, GDPR 내에서도 분명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2) 학술연구와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한편, GDPR은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의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처리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특정한 안전조치를 갖추면 당초의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양립(*compatible*)하는 것으로 간주한다(GDPR 해설전문 제50조). 목적 외 처리의 난제였던 “양립가능성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동 목적을 위한 가명 처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통계적 목적 범위에 대하여 GDPR의 해설이 상당히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어 그 범주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이른바 “빅데이터 활용 조항”이 될 수 있어 관련 업계와 학계의 주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각의 목적에 대한 GDPR 본문의 규정과 해설전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기록보존)의 목적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 목적(*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을 위한 추가 처리는 공익을 위한 기록을 보유한 공공기관, 공공기구 또는 민간기구로서 해당 기록물을 획득, 보존, 평가, 기술(*describe*), 전달, 증진, 유포 및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GDPR 해설전문 제158조). 단,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관이어야 한다.¹²⁾ 따라서 공익적 목적 요건 충족 시 누구든지 추가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기관에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추가 처리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

GDPR은 의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식기반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되고, 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확보한 양질의 지식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면서, 과학적 연구목적은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GDPR 해설전문 157, 159조). 다만 동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추가처리를 위해서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 조건 및 안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역사적 연구목적의 또한 역사연구나 계보학(genealogical) 연구가 포함된다는 점(GDPR 해설전문 169조) 이외에 별도의 세부요건은 발견되지 않으며 회원국의 하위규범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상 “학술연구”라는 통칭을 사용하며 GDPR처럼 연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지 않으나, GDPR 또한 열거규정이 아닌 일종의 예시규정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실익은 현재로서 크지 않아 보인다.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 적정기준이 존재해야 실질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통계적 목적

GDPR은 통계적 목적이란 통계조사나 통계결과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작업 일체를 의미한다고 하며, 유럽연합 및 회원국 법률이 통계내용, 접근통제,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한다고 한다(GDPR 해설전문 162조). 앞서 언급한 다른 목적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기준(법적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그렇지 않은 기업 등)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해설전문을 통해 ① 통계적 목적의 취지와 함의를 정의하였고, ②이에 대한 제29조 작업반의 추가 의견에 따라 공익적 용도뿐 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의 활용도 “통계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민간기업도 동 목적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①과 관련하여, GDPR은 통계 목적으로의 정보처리 결과는 “개인정보가 아닌 집합체 데이터(aggregate data)”로서 “이 결과나 개인정보가 다른 특정 개인에 관한 조치나 결정을 지지하는데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포한다고 명시한다(GDPR 해설전문 162조). 다시 말하면 “통계작성” 과정에는 원천데이터(raw-data) 분석 등 개인정보 처리(가명정보화)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작성의 결과물인 “통계”는 집단현상을 나타내는 수량적 정보¹³⁾로서 누군가에게 공개되어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니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개인정보처리를 통해 통계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②와 관련해서는, ①의 통계결과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목적에만 활용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통계결과는 과학적 연구 목적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GDPR 해설전문 162조). 다만 “과학적 연구 목적 등 다른 목적”이라는 문구 자체가 가지는 추상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9조 작업반은 목적요건 제한에 대한 사항 중 통계적 목적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해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빅데이터 관련 업계와 학계는 동의견으로 인해 GDPR의 해설전문 제162조

13) 우리나라 통계법상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라고 정의한다. (통계법 제3조제1호)

<표 II -4> 제29조 작업반의 통계적 목적 관련 의견(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특히 ‘통계적 목적’은 상업적 목적(예를 들어, 시장 조사를 목표로 하는 웹사이트나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분석 도구)으로부터 공익(예를 들어, 도로 사고의 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병원이 수집한 정보로부터 산출한 통계 정보)까지 광범위한 처리 활동을 포함한다.” (29쪽)

“ ‘Statistical purposes’ in particular, cover a wide range of processing activities, from commercial purposes (e.g. analytical tools of websites or big data applications aimed at market research) to public interests (e.g. statistical information produced from data collected by hospitals to determine the number of people injured as a result of road accidents).”

다만, 동 의견이 일반 영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목적이든지간에 “통계결과”로 만들면 무조건 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 또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이로 인한 공공이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결과와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는 개인정보성(性)을 지닌 가명정보를 사용하므로 일부 완화될지라도 안전조치의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GDPR 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GDPR을 보충할 관련 가이드라인¹⁴⁾ 제·개정내용과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제 활용한 유럽의 사례 안내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익적 성격의 빅데이터 분석도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GDPR의 해설은 국내 빅데이터 업계와 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14) EU는 GDPR에 신규 도입된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석 및 이행 지침을 제시하는 GDPR 후속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간 계획 중에 있음(출처 :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안내서,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7.4월)

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2017년 5월 개정시행)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법과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법률이 상이하다. 먼저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2003년 5월 제정·공포되고 2005년 4월 시행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 이하 “일본개인정보법”)」이 있으며 공공부문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獨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 있다. 이 중 일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중심이 되는 법률은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일본개인정보법이며,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법률은 동 법 제·개정의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본고에서는 일본개인정보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일본개인정보법 또한 유럽의 GDPR 제정 배경과 마찬가지로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인 ‘개인정보보호’ 뿐 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10년대 이후부터 동 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년 간 개정 검토를 거쳐 2015년 9월 제정·공포되었으며, 관계법령 등의 정비를 거쳐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일본개인정보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즉 개인정보를 익명가공정보로 변환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념상 GDPR의 가명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소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IT강국으로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법제 또한 대륙법계(독일·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GDPR 제정과 일본개인정보법 개정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에서는 익명가공정보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익명가공정보의 정의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정보란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일본개인정보법 제2조 제9항). 별도의 조치에 대하여는 「일본개인정보법 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익명가공정보 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정보와 GDPR의 가명정보 비교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정보는 “식별 불가능하고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및 제3자 공표 등 별도의 의무를 부여한 구조다. 반면 GDPR은 가명정보를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 이상 개인정보주체에게 연계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일단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적용하되 특정의무를 경감시키는 구조로 법제를 설계했다. 다시 말하면 GDPR의 가명정보는 처리자의 의무가 감경된 특수한 형태의 “개인정보”이고,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정보는 처리자에게 별도의 법적 의무를 부여한 “비(非)개인정보”다.

법적 의무를 얼마나 감경 또는 추가하느냐에 따라 양자의 차이는 다소 희미해질 수 있겠으나, “목적” 측면에서 본다면 GDPR의 가명정보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양립가능성(*compatible*) 문제 때문에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인 경우에 데이터 이용이나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정보는 비(非)개인정보로서 목적적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조치나 제3자 공표의무 등을 준수한다는 전제라면 GDPR의 가명정보보다 활용의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다.¹⁵⁾

15) GDPR이 통계적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한 통계결과를 의미상 비(非)개인정보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목적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일부 상업적 목적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GDPR의 가명정보 중 통계적 목적으로 추가 처리된

3) 학술연구와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일본의 경우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통계에 대해서는 목적적 요건을 직접 다루지 않고 “통계정보”인지 또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식을 달리한다. 한편, 익명가공정보에 대하여는 사실상 비(非)개인정보로서 활용 목적이 제할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술연구 또는 통계작성 목적의 정보 처리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가)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 중 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혹은 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자가 학술연구의 용도에 제공할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일본개인정보법 제4장¹⁶⁾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개인정보법 제76조제1항제3호) 이는 법문상으로만 볼 때 유럽의 GDPR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과 비교하여 매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학술연구 목적 일지라도 GDPR은 개인식별가능성을 제거하는 “가명처리”를 하도록 명시하며, 우리나라 개인정보법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만 하나, 일본개인정보법은 ①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혹은 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자가 ②학술연구의 용도에 제공할 목적이라면 개인 식별성을 제거하지 않고도 정보주체 동의 획득에 대한 걱정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①과 같이 명시하여 “특정된 단체와 소속된 개인”에게만 허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¹⁷⁾

- 정보가 일본의 익명가공정보와 가장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사건)
- 16) 일본개인정보법 ‘제4장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15조~58조)’에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의 제한, 이용목적의 통지, 적절한 취득(정보주체의 동의), 안전관리조치, 제3자제공의 제한,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의 의무, 정보주체의 정정 및 이용정지 청구 등 사실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이 대부분 포함된다.
 - 17) 다만, 특정된 단체와 소속된 개인일지라도 오남용 가능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교육학회는 각 회원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적정하게 이용하기

나)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일본개인정보법에서 통계작성 “목적”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문구는 없다. 따라서 통계작성 목적만 가지고는 여타 개인정보 처리방식과 달리 취급될 수 없다. 즉 아무런 권한 없는 제3자가 통계정보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모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일본개인정보법 제58조 제1항 제1호)함으로서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적용제외(제4장 적용제외)보다도 법적 의무를 훨씬 완화한다. 즉 상기 예시에서 제3자가 통계청이고, 개인정보보유자가 공공기관이라면 통계청의 제공요청을 받은 객체인 공공기관은 통계법에 근거한 수집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법규 위반에 대한 위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가 인정한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보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공익적 취지와, 통계를 작성한 결과물인 “통계정보” 그 자체는 개인 식별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공표될지라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염려 또한 현저히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통계작성의 결과물인 “통계정보”에 대하여는 일본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익명가공정보 편)」을 통해 별도로 정의했다.(표 II-4.참조) 이에 따르면 “특정 개인과의 대응관계가 배제된 경우”라면 개인정보 또는 익명가공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어떠한 의무나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 즉 익명가공정보도 아니므로 통계정보는 개인정보성(性)을 완전히 잃어버린, GDPR의 “익명정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법제로부터 자유로운 정보로 보는 것이다.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한 ‘일본 교육학회의 회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 중이다. (출처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7.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 II-5> 일본개인정보법 가이드라인(익명가공정보 편)

또한 ‘통계정보’는 여러 사람의 정보에서 공통 요소에 관한 항목을 추출해서 같은 분류별로 집계하여 얻은 데이터로 집단의 경향 또는 성질 등을 수량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통계정보는 특정 개인과의 대응 관계가 배제된 경우에 한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전 법에서도 규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되어 있어 기존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정 개인과의 대응관계가 배제된 경우”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만약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 된다면 통계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로 변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통계청과 같은 통계작성기관의 경우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마련되어있는 반면, 민간이 상업적 용도로 작성한 통계정보는 특정 개인과의 대응관계가 배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은 2011년 9월 제정·시행¹⁸⁾되었다. 제정 이전에도 「정보통신망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법」 등 특정분야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존재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사태 및 피해발생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탄생한 것이 그 배경이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다소 뒤늦게 만들어졌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만큼은 세계 최상위에 위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4년 카드3사 정보유출사태¹⁹⁾ 발생으로 인해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2015년 하반기부터 본

18) 2011년 9월 제정 이후 2018년 9월까지 약 7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다.

19) p.110 참조

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확대 및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벌강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가 확충된 영향이 컸다. (아 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유럽과 일본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법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했다.) 이로 인해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라고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제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법의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관련 법문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가. 학술연구와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법은 “①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②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③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④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8조 제2항 제4호). 이에 대하여 요건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학술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법제는 시행령 등 하위규범이나 가이드라인·매뉴얼에서 아무런 보충설명이 없다. 게다가 학술연구 “등”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안 그래도 추상적인 규정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²⁰⁾도 제기된 바 있다. 일본개인정보법의 경우 학술연구는 “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혹은 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자가 학술연구의 용도에 제공할 목적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로 대상자를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통계작성”도 마찬가지이다. GDPR은 해설전문을 통해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의 예시를 명시하여 그 범주를 구획했고(각주), 일본개인정보법 또한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통계법에 따른 수집의 경우”로 제한하는 등 자의

20) 김후신 (2015),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적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작성되는 “통계”가 개인정보성(性)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다. 물론 ②“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기 때문에 규정의 추상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으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GDPR의 가명처리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정보 처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정보와 같이 개인정보법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수한 익명정보화(化)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③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점과, 개인정보법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④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에 한하여 적용제외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명처리 또는 익명가공정보 수준의 처리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²¹⁾

나.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관련 준수 의무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의무까지 제외되는 등, 일본개인정보법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며 입법단계에서부터 일본의 법령을 적극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도 통계청과 같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를 생산·보급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위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공표되는 통계결과가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 하에 개인정보법에 따라 지켜야 할 핵심적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조치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1) 이와 관련하여 가명정보 또는 익명가공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로 보는 견해로는 박노형·정명현 (2017) 빅데이터 분석기술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 EU GDPR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참고

3.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관련 개인정보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개인정보를 막연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도구로 인식하여 종래의 법제를 대폭 수정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에는 정책방향을 “보호”에서 “안전한 활용”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으며²²⁾, 국회도 작년부터 개인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규제의 문턱을 낮추어 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인정보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가.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제10738호, 2017.12.8.)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법 제1조 “목적” 조항에 대한 개정부터 시작한다. 현행 개인정보법의 목적이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인 반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산업 발전과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일본개인정보법의 목적 조항²³⁾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적 이념까지 기존 문구에서 삭제하면서 마치 산업의 향상과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보일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목적규정 개정을 최소화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2)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8.30.) 참조

23) “이 법률은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과 관련하여 기본이념 및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작성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 있는 경제사회와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 외에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본개인정보법 제1조)

<표 II -6> 개인정보법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의 향상 발전과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제2조 정의규정과 관련해서는 “가명처리정보”를 신설했다. GDPR과 동일하게 정의한 것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제의 방향을 “유럽식”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가명처리정보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 안전한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과 관련해서도 가명처리정보와 연계된 내용이 없어 종래의 규정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18조 제2항 제4호)가 가명처리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표 II -7> 개인정보법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가명처리 정보”란 추가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한편,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적용의 일부제외 대상

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제외”였던 것을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적용제외”로 범위를 제한했다. 제15조 내지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대한 내용임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제외이나,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토록 현행 법률이 가진 우려사항을 사전적으로 방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제12312호, 2018.3.5.)

개인정보법 목적조항에 대한 개정은 없으며,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안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가명처리”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GDPR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하다. 나아가 “가명정보”는 가명 처리하여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명확히 함으로서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 정보”와는 달리 개인정보성(性)을 그대로 지닌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일단 적용되도록 정했다.

<표 II -8> 개인정보법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3. “가명처리”란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의4. “가명정보”란 가명처리를 하여 생성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별도로 명시했다. 대신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²⁴⁾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시킴으로서 보호와 활용을 조화하고자 노력했다. 즉 가명처리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낮다면, 일종의 청구권적 성격을 갖는 적극적 권리까지 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인식으로서, GDPR의 법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의 개인정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동 개정안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크게 ①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시한 점, ②가명정보의 제공이어야 한다는 점, ③제공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9> 개인정보법 제18조 신구조문대비표(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생략)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후단 신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생략)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명정보의 제공은 제공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①과 관련하여, GDPR이 해설전문을 통해 통계적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도 인정한 것과 달리 동 개정안은 통계작성과 학술연구가 반드시 “공익적

24)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범주를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동 개정안에 대해 GDPR 및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은 날 발의된 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289) 사례²⁵⁾를 들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공익’을 추가할 경우 가명정보 활용 범위가 ‘공익 목적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로 축소되어 이 경우 기술발전 등에 기여하는 ‘상업적 목적의 연구’, ‘시장조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최상위기구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이며 국제적인 추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②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라고 추상적으로 정의되어있던 기존 문구를 “가명정보”로 명확히 함으로서, 앞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의존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도하고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불안감까지 떠맡아야 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명정보 처리와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③의 경우 가명정보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라는 대의(大義)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제공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명정보가 해당목적의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제18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하도록 이미 명시되어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후단으로 신설되어야 할 만한 문구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25) 동 개정안과 같은 날 발의된 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2289)은 “통계작성, 연구개발 및 시장조사 등”으로 개정하고 있음 [개정안(12289호) 제22조의1제1항 참조]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4.9.)

4. 시사점 및 입법론적 제언

가. 시사점과 각국 법제의 특징 정리

앞서 유럽의 GDPR과 일본개인정보법이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개념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법과 함께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세계적 흐름은 현재 유럽과 일본이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대륙법·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와 맞물려 이들 국가의 법제와 유사한 구조로 개편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가 빅데이터 활용의 정점에 있는 만큼, 유럽과 일본의 입법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다.

각국 법제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먼저 GDPR은 개인 식별성을 제거한 특수한 형태의 개인정보인 “가명정보”를 신설하여 공익적 기록보존이나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으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적 목적에는 공익적 목적 뿐 만 아니라 시장조사 등을 위한 상업적 목적까지 포함시킴으로서 빅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한편 일본개인정보법은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해 개인식별성을 제거하고 다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는 비(非)개인정보로서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국가가 인정한 단체로서 그에 소속된 자가 연구에 필요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순수한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관리된다. 즉,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인증 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은 가명정보 또는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일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그 형태가 GDPR의 가명정보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일본개인정보법의 익명가공정보 수준을 의미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또한 일본개인정보법과 유사한 점으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적용을 일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표 II-10> 유럽·일본·한국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

구분		EU	일본	우리나라
특수한 형태의 개인 또는 비(非)개인 정보	명칭	가명정보	익명가공정보	미정의
	특징	완화된 개인정보	강화된 비(非)개인정보	미정의
	목적1)	공익적 기록보존이나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	별도 목적 불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
일반 개인정보	목적1)	미정의	학술연구 및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

주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을 말함

나. 입법론적 제안

우리나라 개인정보법도 유럽 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회색지대(gray-zone)에 위치한 특수한 형태의 개인정보 또는 비(非)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식은 일단 “개인정보”로 보되 일부 의무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며, 일본식은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부 의무를 부가하는 방식이다. 생각건대 유럽식(GDPR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제 변화의 연착륙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식별성을 제거한 특수한 형태의 개인정보는 특정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이다.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안과 같이 가명처리와 가

명정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공방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한 다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가명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과 관련하여 과연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가명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GDPR의 해설전문이나 일본개인정보법의 가이드라인처럼 별도의 문서를 통해 반드시 사전적으로 정의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향후 가명정보가 도입될 경우 가장 중요한 논제는 “어떤 목적으로 누가 처리할 수 있는 가”일 것이다. 예를 들어 통계작성은 GDPR과 같이 상업적 목적도 포함하여 내부적인 시장조사와 같은 목적인 경우 일반기업에도 허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해야할 것이며, 학술연구의 경우는 일본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대학 또는 연구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며 공익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목적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과 같이 가명정보도 아닌 순수한 개인정보 마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무부처 및 빅데이터 업계와 학계가 “목적”과 “처리자의 자격”에 대해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고민 없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²⁶⁾이며 결과적으로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GDPR의 경우 최초 제정까지 4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될 정도였다고 하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가명정보 처리(가공)방법과 더불어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26) 신용정보법의 경우 2015년 개정 당시 하위법령이나 관련 고시 등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되어 금융회사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해당 법령과 고시 등을 반영한 금융회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시행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 2017년에 이르러 발간됨)

III. 결론

우리나라는 강력한 IT기술과 정보처리망 등 데이터산업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고루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되었다. 물론 강력한 법제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금융회사 등에게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만큼은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역시 보장이 강화되었다. 즉,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펀더멘털(fundamental)이 튼튼해진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운전 자체를 가급적 지양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처방이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신호체계 하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권장하여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민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럽과 일본은 수 년 전부터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제·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발전 등 국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도로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는 등록차량으로서 “가명정보”와 “익명가공정보”를 별도로 정의했으며, 학술연구나 통계적 목적을 위해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GDPR), 등록차량의 출발과 정지를 규율하는 신호등 또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술연구와 통계적 목적(통계작성 목적 포함)의 데이터 이동부터가 빅데이터 활용의 첫 단추인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을 수용하여 실제로 정보보호법제의 패러다임을 “보호” 일관의 정책에서 “안전한 활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²⁷⁾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이며 국가전략 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 경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데이터

27) p.127 참조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다. 이 중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관련 법 정비 등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규제혁신도 발표의 주요내용 중 하나다. 앞으로 법제가 정비되면서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그 출발은 해외 입법례에서 보듯이 “학술연구와 통계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술연구와 통계작성” 문언 자체가 공익성 또는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부부처·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가명정보와 같은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법제 개정에 맞추어 이들 기관에 대한 데이터 분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조사연구·통계분석 부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하는 등 다가오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378) (<http://likms.assembly.go.kr>)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312) (<http://likms.assembly.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EU회원국 및 주요국가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연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EU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0738) 의견조화에 관한 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2312) 의견조화에 관한 건
- 김후신 (2015)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박노형, 정명현 (2017)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 EU GDPR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이대희 (2017)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40 00569/13/EN WP203, (2013.04.02.).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Regulation (EU) 2016/679)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15年法律第57号)

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통계

- I. 신용보증 현황
- II. 업종별 신용보증 공급현황
- III.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 IV.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공급현황
- V.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 VI.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공급현황
- VII.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 VIII.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건 현황
- IX. 재단별 신용보증 잔존건 현황

I.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월	보증공급		보증잔액		운용배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6	414	438	410	433	0.6
1997	1,296	1,031	1,369	1,101	0.8
1998	3,199	2,020	3,391	2,248	1.2
1999	14,059	5,099	14,777	5,300	1.3
2000	21,883	8,058	29,946	10,114	1.7
2001	31,635	11,206	50,076	14,878	2.0
2002	39,963	12,543	70,023	19,326	2.1
2003	49,849	14,839	89,347	23,123	2.2
2004	48,517	15,067	99,688	26,269	2.4
2005	79,929	21,574	136,228	34,133	2.8
2006	77,691	23,717	164,386	40,326	3.1
2007	94,582	27,514	195,808	45,867	3.1
2008	187,878	38,897	306,006	59,893	3.7
2009	467,173	83,909	660,367	111,954	5.3
2010	375,842	67,940	833,412	132,479	6.0
2011	256,434	60,801	835,802	136,088	5.5
2012	275,845	63,581	829,578	135,147	5.0
2013	350,944	77,859	837,659	142,719	4.9
2014	375,150	85,057	756,842	144,501	4.8
2015	448,844	106,386	833,213	162,423	5.0
2016	464,329	111,849	910,813	179,713	5.3
2017	478,419	116,229	984,378	191,673	5.5
2018.8	352,319	86,295	1,023,304	201,978	5.4

II -1. 업종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39,963	9,709		7,084	15,141	6,739
2003	49,849	9,519		8,398	19,360	11,212
2004	48,517	9,806	8,554	8,461	16,736	4,960
2005	79,929	13,558	16,022	16,096	27,390	6,863
2006	77,691	13,882	13,609	14,717	29,145	6,338
2007	94,582	15,200	16,257	18,456	35,022	9,647
2008	187,878	20,555	35,803	51,837	60,943	18,740
2009	467,173	38,424	81,415	100,198	165,107	82,029
2010	375,842	30,810	67,406	79,468	123,483	74,675
2011	256,434	25,710	46,611	58,297	89,143	36,673
2012	275,845	27,492	50,436	62,281	95,798	39,838
2013	350,944	31,349	65,835	78,821	119,970	54,970
2014	375,150	32,659	68,945	86,304	125,982	61,260
2015	448,844	34,125	83,261	108,987	146,282	76,189
2016	464,329	37,248	87,311	109,251	152,417	78,102
2017	478,419	46,418	109,910	114,981	152,486	54,624
2018.8	352,319	29,626	68,989	82,074	111,342	60,288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II -2. 업종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12,543	5,071		1,487	3,798	1,603
2003	14,839	4,771		1,795	4,926	2,801
2004	15,067	5,293	2,092	1,772	4,375	1,535
2005	21,574	7,239	3,426	2,808	6,448	1,653
2006	23,717	8,217	3,122	2,874	7,529	1,975
2007	27,514	8,982	3,602	3,473	8,963	2,493
2008	38,897	9,470	5,793	8,353	11,469	3,813
2009	83,909	14,425	13,257	14,804	29,333	12,091
2010	67,940	12,608	10,473	11,968	22,817	10,074
2011	60,801	12,678	8,992	10,933	20,735	7,463
2012	63,581	12,387	9,802	11,691	21,944	7,758
2013	77,859	13,304	12,682	14,918	26,731	10,224
2014	85,057	15,471	12,957	16,843	28,463	11,323
2015	106,386	17,287	16,545	22,880	34,067	15,607
2016	111,849	18,771	17,546	23,233	36,768	15,531
2017	116,229	20,955	21,977	25,056	36,688	11,553
2018.8	86,295	13,716	14,360	18,232	27,293	12,694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Ⅲ-1.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70,023	13,864		13,209	25,111	16,162
2003	89,347	15,968		17,006	33,577	20,688
2004	99,688	16,798	20,090	19,026	37,337	6,437
2005	136,228	21,613	26,312	27,688	50,401	10,214
2006	164,386	25,371	30,301	34,027	62,359	12,328
2007	195,808	28,662	35,813	41,466	73,017	16,850
2008	306,006	35,376	60,183	74,266	107,679	28,502
2009	660,367	57,755	120,167	150,873	231,241	100,331
2010	833,412	66,005	150,703	184,241	282,974	149,489
2011	835,802	66,643	151,135	186,542	283,265	148,217
2012	829,578	66,757	150,390	187,308	282,292	142,831
2013	837,659	67,044	153,324	189,312	286,079	141,900
2014	756,842	60,460	141,493	177,184	254,825	122,880
2015	833,213	64,326	157,991	203,436	276,196	131,264
2016	910,813	69,755	175,523	220,932	296,108	148,495
2017	984,378	75,454	197,448	239,860	314,593	157,023
2018.8	1,023,304	77,824	207,380	249,600	322,029	166,471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Ⅲ-2.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19,326	6,462		2,521	5,655	4,060
2003	23,123	6,754		3,317	7,563	4,792
2004	26,269	7,532	4,474	3,791	8,664	1,809
2005	34,133	9,969	5,482	5,031	11,191	2,461
2006	40,326	11,564	6,096	6,035	13,633	2,999
2007	45,867	12,577	6,947	7,033	15,567	3,743
2008	59,893	13,406	10,067	11,100	19,903	5,417
2009	111,954	18,655	18,632	21,691	38,351	14,624
2010	132,479	19,969	21,991	25,762	45,343	19,414
2011	136,088	20,642	22,326	26,935	46,847	19,338
2012	135,147	19,700	22,318	27,450	47,195	18,483
2013	142,719	20,184	23,846	29,518	50,015	19,156
2014	144,501	20,090	23,933	30,935	50,337	19,206
2015	162,423	21,117	27,215	37,120	55,007	21,964
2016	179,713	23,331	30,512	41,165	59,711	24,994
2017	191,673	24,287	33,758	44,801	62,775	26,052
2018.8	201,978	25,115	35,934	47,238	65,496	28,195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Ⅳ.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공급현황

(단위 : 건, 억원)

연월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39,963	12,543	32,776	8,212	6,388	4,247	799	85
2003	49,849	14,839	43,424	10,530	5,929	3,805	496	504
2004	48,517	15,067	40,939	9,577	7,066	4,765	512	725
2005	79,929	21,574	71,192	14,875	8,057	5,672	680	1,027
2006	77,691	23,717	69,013	16,262	7,820	6,462	858	993
2007	94,582	27,514	85,936	19,585	7,512	6,694	1,134	1,235
2008	187,878	38,897	180,115	31,213	6,676	6,349	1,087	1,335
2009	467,173	83,909	457,720	74,823	8,110	7,570	1,343	1,515
2010	375,842	67,940	367,447	58,928	7,053	6,879	1,342	2,133
2011	256,434	60,801	247,698	51,385	6,816	7,391	1,920	2,026
2012	275,845	63,581	266,920	54,637	7,003	6,960	1,922	1,984
2013	350,945	77,859	342,062	68,926	6,938	7,011	1,945	1,922
2014	375,150	85,057	367,150	74,892	6,657	7,812	1,343	2,353
2015	448,844	106,386	441,160	94,755	6,609	9,330	1,075	2,301
2016	464,329	111,849	456,504	100,564	6,555	8,934	1,270	2,351
2017	478,419	116,229	470,843	105,476	6,320	8,820	1,256	1,933
2018.8	352,319	86,295	346,943	79,776	4,880	5,483	496	1,036

V.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단위 : 건, 억원)

연월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70,023	19,326	61,672	13,219	7,572	5,207	779	900
2003	89,347	23,123	80,486	17,300	8,193	5,072	668	751
2004	99,688	26,269	89,881	19,479	9,133	5,934	674	856
2005	136,228	34,133	124,400	25,492	10,973	7,482	855	1,160
2006	164,386	40,326	152,132	30,906	11,254	8,151	1,000	1,270
2007	195,808	45,867	183,528	35,924	11,093	8,541	1,187	1,402
2008	306,006	59,893	293,662	49,720	10,975	8,508	1,369	1,665
2009	660,367	111,954	645,940	99,923	12,794	10,174	1,633	1,858
2010	833,412	132,479	818,335	120,031	13,063	10,148	2,014	2,300
2011	835,802	136,088	820,049	123,007	13,488	10,624	2,265	2,456
2012	829,578	135,147	813,614	122,817	13,579	9,916	2,385	2,415
2013	837,660	142,719	821,714	130,428	13,458	9,825	2,488	2,466
2014	756,842	144,501	742,528	132,294	12,174	9,547	2,140	2,660
2015	833,213	162,423	818,806	150,216	12,312	9,751	2,095	2,456
2016	910,813	179,713	896,596	167,220	12,069	9,901	2,148	2,592
2017	984,378	191,673	970,294	179,386	12,038	9,878	2,046	2,409
2018.8	1,023,304	201,978	1,008,821	189,408	12,456	10,012	2,027	2,558

VI-1.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39,963		36,804	1,961	881	317
2003	49,849	44,239	1,688	2,293	1,231	398
2004	48,517	37,606	7,042	2,362	1,127	380
2005	79,929	64,620	10,293	2,814	1,613	589
2006	77,691	59,329	12,082	3,520	1,966	794
2007	94,582	73,349	13,799	4,166	2,440	828
2008	187,878	162,209	17,396	4,889	2,667	717
2009	467,173	426,292	31,587	5,620	2,972	702
2010	375,842	339,485	27,142	5,598	2,924	693
2011	256,434	215,830	29,897	6,419	3,302	986
2012	275,845	232,316	32,651	6,730	3,322	826
2013	350,944	302,984	35,755	7,860	3,472	873
2014	375,150	320,898	40,694	9,151	3,587	820
2015	448,844	380,563	52,419	11,118	3,825	919
2016	464,329	391,490	55,124	12,715	3,981	1,019
2017	478,419	399,064	59,625	14,666	4,231	833
2018.8	352,319	290,177	47,264	11,536	2,793	549

VI-2.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12,543		8,475	1,698	1,435	935
2003	14,839	8,803	1,460	1,464	1,943	1,169
2004	15,067	7,210	2,938	1,937	1,809	1,173
2005	21,574	10,450	4,198	2,377	2,562	1,988
2006	23,717	10,158	4,894	2,781	3,089	2,796
2007	27,514	11,808	5,523	3,267	3,804	3,112
2008	38,897	21,125	6,778	3,736	4,105	3,153
2009	83,909	56,859	14,043	4,660	4,905	3,441
2010	67,940	42,850	11,818	4,640	4,840	3,792
2011	60,801	33,071	12,759	5,256	5,309	4,406
2012	63,581	35,611	13,774	5,380	5,267	3,549
2013	77,859	47,391	14,990	6,149	5,469	3,860
2014	85,057	49,955	16,954	6,986	5,662	5,500
2015	106,386	63,456	21,664	8,135	5,858	7,273
2016	111,849	65,997	22,960	9,356	6,159	7,377
2017	116,229	68,127	24,130	10,595	6,536	6,841
2018.8	86,295	50,279	18,930	8,308	4,241	4,537

Ⅶ-1.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70,023	-	65,828	2,464	1,334	397
2003	89,347	76,856	8,398	2,497	1,261	335
2004	99,688	83,882	10,955	2,950	1,477	424
2005	136,228	114,143	15,660	3,704	2,068	653
2006	164,386	137,009	19,429	4,453	2,662	833
2007	195,808	163,699	22,587	5,376	3,237	909
2008	306,006	267,742	27,360	6,363	3,654	887
2009	660,367	604,646	42,881	7,714	4,206	920
2010	833,412	772,038	47,887	8,332	4,334	821
2011	835,802	768,746	52,515	9,071	4,436	1,034
2012	829,578	756,858	57,721	9,518	4,521	960
2013	837,659	758,480	62,716	10,806	4,647	1,010
2014	759,842	670,901	67,672	12,605	4,796	868
2015	833,213	731,537	81,177	14,928	4,781	790
2016	910,813	795,050	91,523	18,341	5,021	878
2017	984,378	856,459	99,961	21,854	5,258	846
2018.8	1,023,304	883,277	108,546	25,397	5,278	806

Ⅶ-2.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19,326	-	13,911	2,089	2,192	1,134
2003	23,124	14,461	3,618	2,071	2,019	954
2004	26,269	15,663	4,577	2,414	2,359	1,256
2005	34,133	19,381	6,383	2,970	3,279	2,120
2006	40,326	22,241	7,728	3,493	4,136	2,730
2007	45,867	24,767	8,846	4,177	4,997	3,080
2008	59,893	35,616	10,594	4,876	5,620	3,187
2009	111,954	77,186	18,093	6,195	6,729	3,751
2010	132,479	94,647	20,387	6,817	7,066	3,562
2011	136,088	95,248	22,121	7,351	7,164	4,204
2012	135,147	93,015	23,889	7,593	7,130	3,520
2013	142,719	97,481	25,798	8,405	7,244	3,791
2014	144,501	95,754	28,016	9,517	7,440	3,774
2015	162,423	107,646	32,625	10,792	7,269	4,091
2016	179,713	118,064	36,513	12,940	7,596	4,600
2017	191,673	125,337	38,989	15,027	8,018	4,302
2018.8	201,978	130,323	41,834	17,400	8,010	4,411

Ⅷ-1.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414	277	127	2	8			
1997	1,296	559	139	68	380	132	18	
1998	3,199	816	123	227	829	364	744	58
1999	14,059	3,000	629	795	2,716	1,421	2,443	1,707
2000	21,883	5,408	1,027	751	3,647	1,387	2,979	2,226
2001	31,635	9,881	1,978	994	3,455	1,479	3,262	2,221
2002	39,963	10,449	2,164	1,045	3,483	1,468	3,589	2,425
2003	49,849	12,033	2,314	1,487	3,839	1,594	4,124	3,582
2004	48,517	8,544	2,414	1,557	4,284	1,953	4,377	4,514
2005	79,929	11,740	4,024	2,200	5,305	2,179	6,082	5,564
2006	77,691	13,807	4,533	1,931	10,283	1,805	7,052	5,974
2007	94,582	15,158	5,082	1,706	9,692	1,942	9,067	7,142
2008	187,878	33,527	11,018	6,580	15,038	4,204	18,024	12,940
2009	467,173	86,048	26,048	17,672	29,498	11,732	45,734	30,940
2010	375,842	59,608	22,786	12,635	21,356	10,446	51,565	33,637
2011	256,434	30,721	18,319	8,676	13,623	6,180	43,659	26,362
2012	275,845	32,767	21,686	14,697	14,683	6,613	41,295	25,855
2013	350,945	44,479	27,558	15,975	18,782	9,391	43,797	29,413
2014	375,150	49,501	30,633	15,427	17,930	11,331	44,992	32,481
2015	448,844	60,412	35,046	16,448	21,427	13,181	51,984	32,521
2016	464,329	58,821	42,015	17,976	26,329	15,222	56,445	31,465
2017	478,419	62,065	47,140	17,139	30,490	14,894	59,782	28,548
2018.8	352,319	45,275	37,040	12,468	24,135	10,795	41,345	19,199

VIII-1.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건 현황(계속)

(단위 : 건)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1997
38									1998
447	395	101	405						1999
825	837	469	2,082	99	146				2000
1,170	798	827	4,587	407	393	183			2001
1,391	1,248	2,220	7,948	873	1,163	497			2002
1,792	1,453	1,485	12,718	1,056	1,383	490	475	24	2003
2,182	1,571	1,514	11,820	919	1,247	725	504	392	2004
2,887	1,821	2,158	28,939	1,321	2,136	1,681	1,426	466	2005
3,105	1,983	3,090	15,679	1,654	2,344	2,244	1,338	869	2006
3,571	2,459	3,872	23,323	2,140	2,814	2,854	1,982	1,778	2007
8,461	4,824	9,064	40,809	3,550	7,548	6,082	3,955	2,254	2008
16,929	13,176	15,309	106,449	9,133	19,782	14,476	18,256	5,991	2009
16,128	10,899	11,560	67,565	8,734	14,539	14,425	13,264	6,695	2010
13,717	8,036	8,701	36,604	6,805	10,511	11,736	8,113	4,671	2011
14,648	8,732	9,963	38,972	8,396	11,245	12,953	8,679	4,661	2012
18,507	11,593	13,912	59,658	9,368	15,407	16,683	11,008	5,416	2013
21,477	12,932	17,134	54,739	10,671	16,928	18,474	14,604	5,896	2014
30,567	15,995	19,917	70,447	12,666	22,523	20,301	17,910	7,499	2015
35,668	15,849	20,779	56,608	14,213	23,922	20,713	20,641	7,663	2016
35,287	17,841	21,859	54,561	12,832	24,333	21,981	21,492	8,175	2017
27,769	13,503	15,643	42,225	9,554	17,992	13,353	14,965	7,058	2018.8

Ⅷ-2.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438	295	136	2	5			
1997	1,031	445	165	67	260	79	15	
1998	2,020	663	122	156	481	180	349	23
1999	5,099	1,298	217	302	925	360	862	355
2000	8,058	1,918	334	300	1,153	341	1,023	395
2001	11,206	3,021	575	378	1,189	412	1,157	406
2002	12,543	3,121	597	359	1,244	371	1,273	482
2003	14,839	3,947	579	458	1,303	388	1,422	789
2004	15,067	3,739	568	432	1,389	495	1,388	948
2005	21,574	5,904	930	568	1,640	516	1,803	1,393
2006	23,717	6,930	1,013	486	2,354	419	2,166	1,476
2007	27,514	7,628	1,048	432	2,426	471	2,538	1,809
2008	38,897	10,018	1,927	958	3,189	695	3,546	2,543
2009	83,909	18,185	4,267	2,457	5,956	1,712	8,190	6,306
2010	67,940	15,301	3,653	1,771	4,464	1,483	8,365	6,328
2011	60,801	12,367	3,610	1,519	3,603	1,219	8,103	6,131
2012	63,581	12,333	4,285	2,086	3,724	1,276	8,095	6,110
2013	77,859	14,968	5,294	2,404	4,256	1,884	8,540	6,774
2014	85,057	18,894	5,898	2,448	4,284	2,326	9,054	7,024
2015	106,386	23,395	7,082	3,005	5,608	2,662	10,914	7,117
2016	111,849	23,872	8,492	3,568	7,496	3,212	12,289	6,890
2017	116,229	25,822	9,389	3,395	8,595	3,281	12,462	6,201
2018.8	86,296	18,375	7,399	2,659	6,598	2,505	8,417	4,239

VIII-2.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액 현황(계속)

(단위 : 억원)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1997
46									1998
321	104	31	325						1999
484	210	213	1,567	54	67				2000
598	238	321	2,510	181	180	41			2001
667	334	748	2,609	300	330	109			2002
728	339	556	3,379	326	377	111	133	5	2003
893	349	572	3,179	310	358	201	158	91	2004
1,007	385	784	4,856	450	523	401	320	96	2005
1,162	440	995	4,047	614	629	500	256	230	2006
1,300	616	1,182	5,206	705	720	620	347	467	2007
1,887	825	1,662	7,557	824	1,277	923	536	531	2008
3,356	2,087	2,491	18,703	1,724	3,462	2,075	1,962	973	2009
2,896	1,745	1,859	11,915	1,575	2,292	1,852	1,454	988	2010
2,918	1,593	1,822	10,167	1,385	2,177	2,035	1,189	964	2011
3,051	1,714	2,035	10,208	1,640	2,428	2,183	1,370	1,042	2012
3,810	2,154	2,538	14,096	1,883	3,261	3,023	1,759	1,217	2013
4,432	2,205	2,966	12,134	2,403	3,852	3,691	2,105	1,343	2014
6,693	2,877	3,783	16,199	3,034	5,036	4,477	2,764	1,740	2015
7,796	2,904	4,078	12,416	3,620	5,205	4,585	3,520	1,906	2016
7,527	3,359	4,394	12,368	3,081	5,279	5,023	3,964	2,088	2017
5,943	2,641	3,196	10,286	2,243	3,857	3,220	2,958	1,760	2018.8

IX-1. 재단별 신용보증 잔존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410	273	127	2	8			
1997	1,369	552	271	66	335	127	18	
1998	3,391	960	200	248	711	444	732	58
1999	14,777	3,399	666	875	2,574	1,640	2,667	1,645
2000	29,946	8,174	1,501	1,263	4,358	2,442	4,177	3,127
2001	50,076	16,973	3,174	1,799	5,302	3,015	5,315	3,955
2002	70,023	23,516	4,595	2,039	5,852	3,264	6,125	4,558
2003	89,347	29,049	5,777	2,733	6,413	3,354	6,364	5,700
2004	99,688	27,456	6,389	3,359	7,024	3,712	6,845	7,116
2005	136,228	29,197	7,635	4,458	8,300	4,111	8,418	8,506
2006	164,386	33,304	9,496	5,301	13,924	4,160	9,943	9,508
2007	195,808	36,668	10,776	5,371	16,921	4,241	12,613	11,283
2008	306,006	56,398	16,340	9,767	23,954	6,573	21,484	16,731
2009	660,367	123,778	35,533	24,060	43,768	15,152	48,471	37,788
2010	833,412	153,915	46,311	31,157	52,081	20,851	58,640	47,149
2011	835,802	150,429	48,379	30,819	49,178	19,934	57,037	46,282
2012	829,578	145,225	51,101	33,892	45,010	19,088	54,147	44,427
2013	837,659	138,570	52,219	37,110	45,868	19,196	53,869	44,248
2014	756,842	122,257	49,308	36,179	38,410	19,204	53,366	44,253
2015	833,213	135,275	53,620	33,448	42,452	20,866	60,172	46,390
2016	910,813	151,576	60,546	34,729	49,079	24,208	66,340	50,114
2017	984,378	167,552	67,415	36,581	54,170	26,732	71,799	53,449
2018.8	1,023,304	177,248	73,197	37,941	55,840	28,209	74,900	56,018

IX-1. 재단별 신용보증 잔존건 현황(계속)

(단위 : 건)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1997
38									1998
412	388	101	410						1999
1,001	1,073	471	2,115	98	146				2000
1,727	1,503	908	5,358	400	468	179			2001
2,408	1,850	2,506	10,370	906	1,413	621			2002
3,321	2,147	2,739	16,504	1,484	2,361	921	456	24	2003
4,194	2,366	2,846	20,774	1,964	3,055	1,348	843	397	2004
5,393	2,866	3,275	42,105	2,381	4,454	2,358	2,007	764	2005
6,500	3,512	4,250	48,993	2,480	5,504	3,337	2,930	1,244	2006
7,231	4,395	4,867	61,349	2,658	6,307	4,346	4,331	2,451	2007
12,049	7,481	10,673	90,378	3,983	11,514	7,778	7,077	3,826	2008
23,801	17,565	21,938	180,439	10,650	28,186	18,219	23,345	7,674	2009
33,032	23,866	28,036	217,776	14,436	37,458	25,341	31,816	11,547	2010
34,858	24,748	28,363	219,090	13,869	41,040	26,912	33,435	11,429	2011
35,315	24,683	27,805	218,803	12,951	43,721	27,854	34,157	11,399	2012
37,521	25,274	26,728	222,141	13,436	47,732	29,157	33,185	11,405	2013
38,903	25,677	25,800	172,078	14,811	44,439	30,965	29,710	11,482	2014
44,681	28,459	28,899	192,599	17,914	50,587	34,936	30,596	12,319	2015
50,653	31,710	30,387	201,324	20,518	54,919	38,684	32,651	13,375	2016
54,971	35,780	32,956	210,598	21,979	59,148	41,957	35,148	14,143	2017
58,914	37,376	34,595	209,191	22,662	62,044	43,394	36,267	15,508	2018.8

IX-2. 재단별 신용보증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433	290	136	2	5			
1997	1,101	442	272	63	233	77	15	
1998	2,248	794	209	173	428	234	341	23
1999	5,300	1,603	254	346	596	466	974	340
2000	10,114	2,840	431	430	1,270	574	1,354	553
2001	14,878	4,607	806	351	1,448	692	1,620	635
2002	19,326	5,897	1,134	602	1,603	757	1,849	771
2003	23,123	7,222	1,272	726	1,752	766	1,905	1,126
2004	26,269	7,815	1,301	833	1,917	852	2,033	1,491
2005	34,133	10,003	1,582	1,025	2,252	935	2,438	1,941
2006	40,326	11,470	1,895	1,131	3,095	906	2,902	2,250
2007	45,867	12,034	2,060	1,101	3,571	925	3,446	2,754
2008	59,893	14,332	2,824	1,568	4,507	1,190	4,433	3,488
2009	111,954	23,673	5,671	3,328	7,720	2,270	8,930	7,249
2010	132,479	27,991	6,869	4,081	8,696	2,860	10,147	8,301
2011	136,088	28,314	7,159	4,273	8,327	2,876	10,282	8,635
2012	135,147	27,277	7,315	4,359	7,733	2,963	10,157	8,753
2013	142,719	28,708	8,004	4,883	7,650	3,388	10,240	9,035
2014	144,501	30,006	8,631	5,173	7,328	3,695	10,249	8,986
2015	162,423	32,890	9,574	4,992	8,652	4,083	12,026	9,255
2016	179,713	36,355	10,853	5,642	10,671	4,781	13,630	9,647
2017	191,673	38,987	11,984	6,018	11,772	5,302	14,223	9,916
2018.8	201,979	41,406	13,093	6,279	12,474	5,669	14,429	10,274

IX-2. 재단별 신용보증 잔액 현황(계속)

(단위 : 억원)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1997
46									1998
270	103	31	317						1999
533	251	212	1,547	53	67				2000
728	361	341	2,880	173	196	40			2001
896	442	810	3,740	323	370	133			2002
1,119	469	851	4,606	455	519	202	127	5	2003
1,342	505	875	5,405	601	630	337	241	91	2004
1,558	601	1,034	7,984	745	852	556	464	164	2005
1,786	738	1,286	9,326	850	1,065	745	575	305	2006
2,002	1,005	1,402	11,169	853	1,237	944	745	620	2007
2,528	1,430	2,099	15,381	934	1,929	1,323	1,021	907	2008
4,287	2,875	3,478	29,234	1,958	4,634	2,666	2,648	1,334	2009
5,405	3,583	3,944	34,680	2,316	5,392	3,198	3,305	1,713	2010
5,711	3,768	3,926	35,960	2,210	6,002	3,464	3,445	1,734	2011
5,928	3,839	3,880	34,925	2,256	6,367	3,879	3,622	1,895	2012
6,648	4,260	4,038	35,450	2,499	7,150	4,845	3,867	2,055	2013
7,437	4,519	4,150	31,744	3,035	7,584	5,907	3,778	2,278	2014
9,002	5,022	4,984	35,407	4,023	8,797	6,795	4,261	2,659	2015
10,408	5,689	5,404	36,709	4,835	9,294	7,747	5,010	3,038	2016
11,188	6,471	6,019	37,030	5,047	9,915	8,613	5,878	3,310	2017
11,997	6,737	6,492	38,537	5,004	10,382	9,120	6,428	3,658	2018.8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일람표

1. 강원신용보증재단
2. 경기신용보증재단
3. 경남신용보증재단
4. 경북신용보증재단
5. 광주신용보증재단
6. 대구신용보증재단
7. 대전신용보증재단
8. 부산신용보증재단
9. 서울신용보증재단
10. 울산신용보증재단
11. 인천신용보증재단
12. 전남신용보증재단
13. 전북신용보증재단
14. 제주신용보증재단
15. 충남신용보증재단
16. 충북신용보증재단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강원(6) www. gwsinbo. or.kr	본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SC은행 3층)	033-260-0001 (033-260-0099)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3층)	033-260-0050 (033-745-3297)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260-0060 (033-644-1351)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 수광빌딩 (기업은행 4층)	033-260-0070 (033-638-9783)
	동해지점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50 (국민은행 2층)	033-260-0085 (033-534-1441)
	태백지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신한은행 2층)	033-260-0080 (033-554-0633)
경기(23) www. gcgf.or.kr	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1577-5900 (031-259-7777)
	남부지역 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안양동, 농협3층)	031-468-1610 (031-468-1611)
	북부지역 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 1101호	031-853-9850 (031-853-9848)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센터 401호	031-888-5454 (031-888-5466)
	의정부 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 3층	031-826-9092 (031-826-9086)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	031-709-7733 (031-703-9944)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4동 302호 (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2단지)	032-328-7130 (032-328-7409)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5층	031-968-7744 (031-968-0020)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 (신한은행)	031-482-8401 (031-482-8412)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농협평택시지부 3층	031-653-8555 (031-653-8556)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농협3층(안양동)	031-387-3525 (031-387-3678)
	남양주 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평내동) 리치플러스빌딩 502호	031-559-8160 (031-559-8166)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경기(23) www. gcgf.or.kr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우리은행 4층	031-635-2514 (031-635-8796)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농협 정프라자 4층	031-366-8070 (031-366-8076)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031-285-8681 (031-285-8610)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031-434-8797 (031-434-8798)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51, 제일메니컬센터빌딩 601호	031-997-1278 (031-997-1283)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031-543-1737 (031-543-1739)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8,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031-942-7521 (031-942-7568)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031-767-7100 (031-767-4100)
	양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031-850-3800 (031-850-3820)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드림프라자 1001호, 1002호	031-613-8777 (031-613-8144)
	광명지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6, 알렉스타워 9층 902호	02-2684-6091 (02-2684-6098)
경남(12) www. gnsinbo. or.kr	본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층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644-2900 (055-715-5130)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1층 (창원컨벤션센터)	1644-2900 (055-715-5150)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동성동)	1644-2900 (055-743-5888)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38, 3층(중부동)	1644-2900 (055-364-2185)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2층(창동)	1644-2900 (055-246-7260)
	거제지점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3층(고현동)	1644-2900 (055-634-5805)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3층(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644-2900 (055-338-2396)
	사천지점	경남 사천시 수남길 8, 2층(선구동)	1644-2900 (055-835-7484)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경남(12) www. gnsinbo. or.kr	통영지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3층(죽림리)	1644-2900 (055-902-8306)
	거창지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2층(중앙리)	1644-2900 (055-945-7704)
	창녕지점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2층(말흘리)	1644-2900 (055-533-8070)
	진해지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1층	1644-2900 (055-717-0084)
	고객지원 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5, 3층 (경남은행 명곡지점 3층)	1644-2900 (055-715-5320)
경북(11) www. gbsinbo. co.kr	본점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1층, 7층)	054-474-7100 (054-474-7104)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 3층)	054-283-2730 (054-283-2704)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원효로 15,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3층)	063-811-0790 (053-811-0793)
	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남문로 20,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054-854-3300 (054-854-334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중앙로 32,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054-777-0140 (054-777-0139)
	영주지점	경북 영주시 번영로 149,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054-631-8300 (054-631-8302)
	김천지점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	054-433-1300 (054-434-1310)
	영천지점	경북 영천시 시장로 4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054-336-6800 (054-336-6900)
	문경지점	경북 문경시 중앙로 14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054-556-7400 (054-556-7404)
	상주지점	경북 상주시 상산로 260, (농협은행 상주시지부 3층)	054-531-3500 (054-531-3504)
광주(6) www. kjsinbo. co.kr	울릉·독도 출장소	경북 울릉군 도동1길 9, (농협은행 울릉군지부 1층)	054-791-8994 (054-791-8995)
	본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1층	062-950-0011 (062-950-0065)
	광산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1층	062-950-0050 (062-950-0063)
	동구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0 (금남로5가) 하나은행 광주지점 5층	062-236-0045 (062-236-2366)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광주(6) www. kjsinbo. co.kr	서구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14 (농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2층	062-362-0091 (062-363-0094)
	북구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41 (매곡동) 삼성디지털프라자 4층	062-576-0091 (062-576-3535)
	남구지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86 (진월동) 우리은행 진월지점 2층	062-654-8055 (062-654-8059)
대구(7) www. ttg.co.kr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053-560-6300 (053-554-9905)
	죽전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053-560-6300 (053-554-9936)
	유통단지 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1층	053-601-5255 (053-601-5176)
	범어동 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동일산업빌딩 3층)	053-744-6500 (053-744-9077)
	월배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09, (대구은행 월배영업부 2층)	053-639-4343 (053-639-4146)
	동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401, 2층	053-982-7500 (053-982-7515)
	중앙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KEB하나은행 3층)	053-256-0300 (053-256-8998)
대전(4) www. sinbo.or. kr	본점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5층)	042-380-3800 (042-380-3898)
	서구유성 센터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35, 3층 (둔산동, KEB하나은행둔산지점)	042-380-3806 (042-368-3860)
	북부지점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3층 (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808 (042-368-3880)
	동부지점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29-6, 2층 (홍도동, 부광빌딩)	042-380-3805 (042-345-0088)
부산(8) www. busansin bo.or.kr	본점	부산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7층	051-860-6600 (051-816-4551)
	서부산 지점	부산시 사하구 낙동강로 1424 (하단동) 동원골드빌딩 4층	051-860-6730 (051-831-1180)
	동부산 지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 (우동) 우리은행 마린시티지점 3층	051-860-6750 (051-755-6030)
	북부산 지점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3 (괘법동) 신한은행 3층	051-860-6700 (051-316-6788)
	중부산 지점	부산시 중구 구덕로 87-1 (남포동6가) 하나은행 11층	051-860-6800 (051-242-6878)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부산(8) www. busansin bo.or.kr	남부산 지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4 (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2층	051-860-6780 (051-611-8944)	
	부산진 지점	부산시 동구 범일로 92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7층	051-860-6880 (051-714-2780)	
	소상공인 희망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부산신용보증재단 사옥 4층	051-860-6722 (051-714-2685)	
서울(21) www. seoul shinbo. co.kr	본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5~18층	1577-6119 (02-3278-8111)	
	자영업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7층	1577-6119 (02-3278-8120)	
	중부	명동지점 (중부지역 본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1577-6119 (02-3278-8148)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6층	1577-6119 (02-3278-8134)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종로4가 11), IBK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1577-6119 (02-3278-8136)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1577-6119 (02-3278-8146)
	동부	신설동 지점(동부 지역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1577-6119 (02-3278-8138)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1577-6119 (02-3278-8140)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동 2가 277-43), 성수IT종합센터1층 104-108호	1577-6119 (02-3278-8142)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1577-6119 (02-3278-8144)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1577-6119 (02-3278-8188)
	서부	강서지점 (서부지역 본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 (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1577-6119 (02-3278-8170)
		영등포 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1577-6119 (02-3278-8166)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 202호, 203호	1577-6119 (02-3278-8168)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1577-6119 (02-3278-8191)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서울(21) www.seoulshinbo.co.kr	강남지점 (남부지역 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141), 성원타워 5층 503호	1577-6119 (02-3278-8164)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1577-6119 (02-3278-8172)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1577-6119 (02-3278-8174)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 (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1577-6119 (02-3278-8176)
	사이버 중앙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5층	1577-6119 (02-3278-8196)
	특수지원 센터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가산동 60-11), 스타밸리 214호	1577-6119 (02-3278-8122)
울 산(4) www.ulsanshinbo.co.kr	본점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052-289-2300 (053-289-8970)
	남울산 지점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농협은행 울산공업탑지점 2층	052-283-0101 (052-266-7994)
	동울산 지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052-281-8100 (052-281-8105)
	서울산 지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 2층	052-285-8100 (052-285-8105)
인천(8) www.icsinbo.or.kr	본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1503 (032-260-1570)
	부평지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3층 (농협은행 부평지점)	032-508-1954 (032-508-1960)
	남부지점	인천시 남구 경인로 341, 2층(주안동)	032-889-3611 (032-889-3615)
	서인천 지점	인천시 서구 탁옥로 58, 3층 (영일빌딩)	032-569-0321 (032-569-0325)
	계양지점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임학동, 훼밀리빌딩)	032-542-3911 (032-542-3918)
	남동지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1500 (032-260-1571)
	중부지점	인천시 동구 송림로 98, 2층 (농협은행 송림동지점)	032-766-8090 (032-766-8094)
	신용관리 지원단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14층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	032-865-2704 (032-865-2723)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전남(11) www. jnsinbo. or.kr	본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4층	061-729-0600 (061-729-0608)
	순천지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층	061-729-0620 (061-729-0609)
	목포지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061-285-0745 (061-285-0747)
	담양지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66 (광주은행 담양지점 2층)	061-383-9451 (061-729-0559)
	보성지점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1 (농협은행 보성군지부 3층)	061-853-1340 (061-729-0579)
	나주지점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에스타워 4층)	061-333-9421 (061-729-0549)
	여수지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5층)	061-642-2471 (061-807-3613)
	해남지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95, 3층	061-535-9333 (061-802-2305)
	영광지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	061-353-7401 (061-729-0599)
	광양지점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광양지점 2층)	061-794-3860 (061-794-3865)
전북(5) www. jbcredit. co.kr	완도지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24-1 (KT 완도지사 2층)	061-555-8800 (061-555-8805)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	063-230-3333 (062-230-3388)
	군산지점	전북 군산시 조춘안3길 20, 군산상공회의소 1층	063-452-0342 (063-452-0355)
	정읍지점	전북 정읍시 중앙1길 76, 정읍새마을금고 2층	063-533-6411 (063-533-6416)
	남원지점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63,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 2층)	063-633-7614 (063-633-7614)
제주(2) www. jeusinbo. co.kr	익산지점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63,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2층)	063-838-9374 (063-838-9330)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KT&G 제주본부4층)	064-758-5740 (064-758-5750)
	서귀포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 신서귀포빌딩 1층)	064-733-8133 (064-733-8136)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충남(8) www. cnsinbo. co.kr	본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30-3859)
	아산지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층)	041-530-3813 (041-541-9838)
	공주지점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5 (구 공주시청 별관 3층)	041-850-9100 (041-858-4704)
	서산지점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	041-671-5555 (041-668-8879)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농협 천안시지부 6층)	041-559-3900 (041-559-3940)
	보령지점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 4층)	041-939-1900 (041-933-9879)
	논산지점	충남 논산시 중앙로 480번길 3 (국민은행 논산지점 3층)	041-730-0800 (041-730-0808)
	당진지점	충남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당진시지부 4층)	041-350-7500 (041-350-7599)
충북(5) www. cbsinbo. or.kr	본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진흥센터 5층)	043-249-5700 (043-237-0362)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00 (교현동) (농협은행 충주시지부 3층)	043-249-5760 (043-856-9064)
	남부지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043-249-5780 (043-733-9714)
	제천시점	충북 제천시 풍양로 92 (명동) (농협은행 제천시지부 3층)	043-249-5790 (043-651-9104)
	혁신도시 지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74, 203호·204호(킹스밀오피스텔 1차)	043-249-5770 (043-877-5779)

KOREG RESEARCH

2018년 10월 22일 인쇄 · 발행

제6권 1호(통권 6호)

ISSN 2288-5536 (비매품)

편집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발행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발행인 | 김병근

편집위원회 | 박찬명(위원장), 김인엽, 김민수, 배진성, 박주완

발간실무 | 조사연구부 윤혁준, 박지은

구독 및 게재 문의 | 042-480-4024

* 『KOREG RESEARCH』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KOREG RESEARCH』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규칙에 맞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KOREG RESEARCH』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조사연구부(042-480-40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